

제 5장 조선시대의 고성

제 1절 행정구역 편제와 고성의 호구 변화

조선왕조는 안정적인 정치기반을 만들기 위해 관제개혁을 점진적으로 실시하다가 태종대에 이르러서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결과 성종대에 이르러 『경국대전』의 완성과 더불어 양반관료체제를 갖추어 나갔다. 조선의 중앙 정치기구로는 의정부와 6조가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 의 정부는 고려의 도평의사사의 계통을 이은 것으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회의기관이었다. 6조인 이조·호조·예조·병조·형조·공조는 담당 정무를 직접 국왕에게 직계하여 그 결재를 받아 시행할 수 있었으며, 점차 중앙 정치의 중심역할을 하였다.

지방은 경기·경상·전라·황해·강원·함경·평안도의 8도로 나누고, 그 밑에 부·목·군·현 등을 두었다. 도에는 관찰사가 임명되어 부윤·목사·군수·현령 등의 수령을 통할하고 감시하였다. 지방관은 행정·사법 등의 광범위한 권한을 위임받고 있었으며, 임기는 관찰사가 1년, 수령은 3~5년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또 자기 출신지에는 임명될 수 없었다. 지방의 각 행정단위에는 모두 중앙의 6조를 모방한 이방·호방·예방·병방·형방·공방의 6방이 있어서 사무를 분담하였다. 이 6방의 일을 맡은 것은 지방 토착의 향리들이었다. 향리들은 향역이라 하여 세습적으로 그 의무를 맡으면서 왕권을 대행하는 수령과 지방 양반세력을 대표하는 향청과의 중간에서 그 교량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동국여지승람』과 『철성지』에 의하면 고성현의 사방경계는 동쪽으로 거제현 경계까지 53리이고, 남쪽으로 바닷가까지 1리, 서쪽으로 진주 경계까지 25리이고, 사천현 경계까지는 40리이며, 북쪽으로 진해현 경계까지 3리이고, 서울과의 거리는 952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다. 그리고 북쪽으로 감영까지는 3백리이고, 서쪽으로 우병영까지는 90리이며, 남쪽으로 통영까지는 50리이다.

고성현의 면리편제는 18세기 말엽까지는 동읍내(東邑內)·서읍내(西邑內)·상서(上西: 혹은 상리(上里)·하일(下二)·하이(下二)·대둔(大菴)·가동(可洞)·마암(馬巖)·구만(九萬)·회현(會賢)·광일(光一)·광이(光二)·도선(道善)·춘원면(春元面) 등 14개면 체제를 유지하다가 『호구총수』 단계에서는 서리면(西里面)이 늘어나 15개 면이 되었다. 이후 19세기 중엽의 『고성읍지』 단계에는 광삼면(光三面)과 포도면(葡萄面)이 증설되어 17개 면이 되었다. 19세기 말엽에는 다시 상서면(上西面)과 시달면(時達面)의 2개 면이 신설되어 19개 면이 되기도 하였다. 이 가운데 춘원면의 호구수는 고성현 전체의 절반 넘게 차지하여 각종 행정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18세기 말 고성현 각 면·리 현황>¹⁾

| 面名 | 里(洞)名 | 비고 |
|-----|--|----|
| 동읍내 | 상동문내 하동문내리 동문외리 동북동 남문내리 남문외리 수문외리 남산하리 읍전포리 구선창리 아차포리 거운지리 울대리 송도리 신화동리 소소리 동읍내읍전포리 | |
| 서읍내 | 특곡리 우산리 신성리 양덕리 무량리 계동리 신기리 무학정리 약촌방리 서문내리 상평리 송수동 향교동 당동리 중도리 교운지리 엄포리 이동서읍내 서문내리 | |
| 상리 | 고곡리 비고곡동산리 척변정리 오산리 가동리 무이산망림리 구미동구포리 며량리 자은교 | |
| 서리 | 화리치 장박지리 삼봉포리 어금포리 두모치 | |
| 하일운 | 수다리 가룡포 고연리 송천리 구소비포 오이방사랑동변리 내지포리 서변리 공수리 빈지포리 하일운사랑서변 | |
| 하이운 | 남고개리 와룡동 거지리 신덕리 군지포 병말포 모라곡리 신전리 덕면리 월아곡 | |
| 대둔 | 목암리 신기리 박건리 척곡리 장전리 사철점리 신전리 갈천리 종생리 | |
| 가동 | 신기리 유월치리 신월리 암곡리 마전리 세동리 신화동리 내가동리 | |
| 마암 | 두포리 두락정리 전도리 평산리 전포리 명송정리 범수동리 화동리 화서리 선미동리 도동리 용전리 시동리 장산리 발산리 성전리 축치리 좌월곡리 신리 어은동리 | |
| 구만 | 홍복동 와룡동 사기점 저동리 가위동 의원동리 내원당리 주천리 소대리 낙동 광암리 | |
| 회현 | 어선리 산북리 신북리 동촌리 자소리 남진리 신천리 강명리 군진리 배둔리 | |
| 광일 | 가리동 장대리 송정리 구현동 은정자황리 안정리 생수동 용산리 | |
| 광이 | 남촌리 당동리 두고리 외곡산리 내곡산리 간동리 포도도 장좌동 독룡포리 며정포리 범법당리 전도리 좌부천리 장기리 | |
| 도선 | 사기막동 평리 선창리 오합포리 저두포리 화월리 남포리 량지포 화주막동 지법리 구허리 우동리 창포리 도선지법 | |
| 춘원 | 죽림리 총리동 장평포 소근포리 지도리 달포리 검하포리 장문리 원문리 좌역포리 조라포리 면량리 와동리 항북리 해송정리 송정리 동허문리 상동문내리 하동문내리 북문내신상리 서부리 서변상리 동구상리 창동리 선창동동교리 명정동 서충리 동충리 서교리 도리동 천동리 동당봉리 서당봉리 대곡리 동해평리 서송정리 도미리 봉수동리 삼천진리 조망포리 신촌리 사전지리 달아리 척포리 조도리 연대도리 달명포리 둔전리 독오지리 해도리 당포리 원항포리 야소동리 곤리도 | |

1) 『여지도서』 고성현.

<18~19세기 고성의 호구수 변화 추이>²⁾

| 구분 | 호수 | 인구 | | | 戶當口數 | 비고 |
|------|-------|--------|--------|--------|------|---------|
| | | 남자 | 여자 | 합계 | | |
| 1759 | 9,435 | 18,613 | 21,421 | 40,034 | 4.24 | 『여지도서』 |
| 1785 | 9,694 | 20,620 | 21,150 | 41,770 | 4.31 | 『고성현읍지』 |
| 1789 | 9,697 | 20,165 | 21,658 | 41,823 | 4.31 | 『호구총수』 |
| 1854 | 9,903 | 24,057 | 22,020 | 46,077 | 4.65 | 『고성읍지』 |
| 1870 | 9,922 | 23,090 | 23,100 | 46,190 | 4.66 | 『영남읍지』 |
| 1893 | 9,503 | 20,435 | 25,411 | 45,846 | 4.82 | 『고성총쇄록』 |
| 1895 | 1,844 | - | - | - | - | 『고성현읍지』 |

<18세기 말 고성현 면별 호구수>³⁾

| 면별 | 호수 | 인구수 | | |
|-----|-------|--------|--------|--------|
| | | 남자 | 여자 | 합계 |
| 동읍내 | 635 | 1,298 | 1,428 | 2,726 |
| 서읍내 | 456 | 735 | 842 | 1,577 |
| 상리 | 184 | 341 | 376 | 717 |
| 서리 | 221 | 492 | 527 | 1,019 |
| 하일운 | 622 | 1,272 | 1,345 | 2,617 |
| 하이운 | 176 | 315 | 350 | 665 |
| 대둔 | 97 | 214 | 225 | 439 |
| 가동 | 165 | 441 | 472 | 913 |
| 마암 | 327 | 553 | 575 | 1,128 |
| 구만 | 241 | 489 | 546 | 1,035 |
| 회현 | 434 | 753 | 842 | 1,595 |
| 광일 | 372 | 711 | 743 | 1,454 |
| 광이 | 576 | 1,351 | 1,418 | 2,769 |
| 도선 | 451 | 1,054 | 1,128 | 2,182 |
| 춘원 | 4,740 | 10,146 | 10,841 | 20,987 |
| 합계 | 9,697 | 20,165 | 21,658 | 41,823 |

2) 하동호, 「17세기말 숙종초 전국호구 인구 정리」, 『한국학보』 20, 1980 ; 김현구, 「18·19세기 고성현의 재정 운영」, 『지역과 역사』 제2호, 1996 참조.

3) 『호구총수』 固城.

『호구총수』에 나타난 고성현은 면수 15개, 리수는 131개로 편성되어 있었다. 원호는 9,697, 인구는 남자는 20,165명, 여자는 21,658명으로 합계 41,823명이었다. 호수와 인구가 가장 많은 면은 춘원면으로 4,740호에 20,987명이었다. 고성현 전체의 호수에서 춘원면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반에 이르고, 인구수는 50%를 넘고 있는 모습이어서 지역발전이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호구수는 춘원면을 이어 광이운면, 동읍내면, 하일운면, 도선면 순이며, 이를 통해 면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던 춘원면의 인구와 호수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8~19세기 춘원면 호구수 변화 추이>

| 구분 | 1789(정조 13) | 1798(정조 22) | 1865(고종2) | 1895(고종 32) |
|-------|-------------|-------------|-----------|-------------|
| 里(洞)數 | 54 | - | 60 | 61 |
| 元戶 | 4,740 | 5,070 | 5,296 | 6,310 |
| 인구 | 20,987 | (22,359) | (23,302) | 45,367 |
| 戶當口數 | 4.43 | 4.41 | 4.40 | 7.19 |
| 里當戶數 | 87.8 | - | 88.3 | 103.4 |
| 비고 | 『호구총수』 | 『비변사등록』 | 『통영지』 | 『통영지』 |

제 2절 재정 구조와 운영

조선후기 고성은 영남의 71개 군현 중 전결이 4천결 이상인 중읍(中邑)으로 분류된 지역이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고을의 형세는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통영의 직할지였던 춘원면은 수령의 관할 밖에 있었고, 사랑진·당포진·구소비포진·남촌진·삼천포진과 소촌도(召村道)에 속한 배둔역·송도역·구허역은 경상우수영의 관할에 있었으며, 미륵산·우산·천왕점·곡산·좌이산 봉수는 경상우병영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수령권의 행사가 취약한 점이 있었다.

18세기 이후 고성현의 전결은 한전(旱田) 2,900여 결과 수전(水田) 3,300여 결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잡탈면세결(雜頒免稅結)이 한전에서 2천 여결과 수전에서 1천 여결이어서 시기결의 모두 3,200여 결 내외가 된다. 이에 따른 전세액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18·19세기 고성현의 전결·부세 변화>4)

| 구 분 | | 1759년 (여지도서) | 1785년 (고성현읍지) | 1854년 (고성읍지) | 1870년 (영남읍지) | 1893년 (고성총쇄록) | 1895년 (고성현읍지) | |
|-------|--------|-----------------|------------------|-----------------|------------------------|------------------|------------------|------------------------|
| 田 結 | 旱 田 | 時起結 | 994-89-7 | 945-74-4 | 1,020-72-7 | 1,126-26-2 | 1,020-72-7 | |
| | | 雜頃 | 1,907-2-3 | 2,019-68-* | 1,949-72-4 | - | 1,949-72-4 | |
| | | 元帳付 | 2,901-92-* | 2,965-42-4 | 2,970-45-1 | - | 2,970-45-1 | |
| | 水 田 | 時起結 | 2,423-59-6 | 2,411결52부3 속 | 2,369-91-4 | 1,392-92-8 | 2,704-68-5 | 2,369-91-4 |
| | | 雜頃 | 915-4-9 | 927결12부2속 | 946-9-7 22-63-4(今頃) | - | 678-39-4 | 946-9-7 22-63-4(今頃) |
| | | 元帳付 | 3,338-64-5 | 3,338-64-5 | 3,338-64-5 | - | 3,382-97-5 | 3,338-64-5 |
| 호구내역 | | | 1786년 | 1855년 | - | 應役民戶 | 1891년 | |
| 田 稅 | 米 | 672.12114 | 978.12725 | 1,390.08098 | | 838.06036 | 1,961.00715 | |
| | 太 | 171.1082 | 160.11956 | 206.13804 | | 163.03776 | 213.02774 | |
| | 均役廳納米 | 3.084 | 좌동 | 좌동 | | 3.084 | - | |
| | 均役廳納太 | 13.017 | 좌동 | 좌동 | | 13.017 | - | |
| | 結田 | | | | | | 1,877.42 | |
| 大 同 米 | 上納米 | 781.09 | 1,150 | 905.01152 | | 1,539.09122 | 2,322.08414 | |
| | 下納米 | 936.202244 | | | | | | |
| 均 役 米 | 海船(隻) | | 871 | | 648 | 선세전 963 | 647 | |
| | 鹽釜(坐) | | 48 | | 55 | 염세전 142 | 45 | |
| | 藿田(庫) | | 6 | | 6 | 곽세전 65.74 | 6 | |
| | 漁條(庫) | | 62 | | 236 | | 61 | |
| | 防簾(庫) | | 43 | | 150 | | 20 | |
| | 商船 | | | | | 상세전399 | | |
| | (實)上納錢 | 2,687.78 | 1,941.51 | 2,466.4 | | 1,569.74 | 2,920.93 | |

※ (전결 단위: 結-負-束)

4) 김현구, 「18·19세기 고성현의 재정 운영」, 『지역과 역사』 2호, 1996, 8쪽 참조.

19세기말 결총(結總)은 6,307결 48부 6속 중 284여결을 제외한 2,715결 99부 6속이 실재결(實在結)이다. 전세미는 1,961석 7두 1홉 4작(勺)이고, 콩은 213여석이고, 대동미는 2,322여 석이다. 한편 19세기 고성현 각 면별 결총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19세기 말 고성현의 각 면 結總 현황>5)

(단위: 結-負-束)

| 구분 | 동읍내 | 서읍 | 상리 | 하일 | 하이 | 대둔 | 가동 |
|-----|---------------|-----------------|------------------|-----------------|----------------|----------------|-----------------|
| 結總 | 481-96-* | 388-65-5 | 364-83-4 | 238-8-1 | 346-91-5 | 205-43-8 | 284-82-3 |
| 免頃 | 72-75-1 | 113-80-2 | 74-29-2 | 71-95-2 | 4-83-9 | 4-94-7 | 22-33-4 |
| 統屯 | 59-24-4 | 26-80-2 | 9-87-4 | 3-7-* | 3-2-9 | 4-94-7 | 22-33-4 |
| 公須位 | 6-33-3 | | | 12-88-2 | | | |
| 守禦屯 | | | | | | | |
| | | | | | | | |
| | 召村驛 7-17-4 | 懿昭墓位 80-**-* | 上南元陵宮 64-41-8 | 舊鎭募戶 56-**-* | 牛古介 1-81-* | | |
| 春卜 | | 學位 7-**-* | | | | | |
| 在結內 | 松道 65-16-5 | 背屯 41-84-5 | 丘墟 34-21-7 | 吏役戶 72-**-* | 吏作戶 28-**-* | 均廳戶 75-**-* | 恩彦君 100-**-* |
| 在結 | 329-20-9 | 274-85-3 | 290-54-2 | 166-21-2 | 342-7-6 | 200-49-1 | 262-48-9 |
| 灾結 | 207-28-7 | 128-9-3 | 148-62-* | 100-13-9 | 116-85-4 | 66-45-8 | 109-28-5 |
| 實結 | 121-92-2 | 146-76-* | 141-92-2 | 66-7-3 | 225-22-2 | 134-3-3 | 153-20-4 |

이에 따르면 도합 4,170결 64부 3속이며 면탈액(免頃額)은 790결로 재결은 3,380결이다. 그 내역을 정리해 보면 통영둔(統營屯)은 13개 면에 걸쳐 233결 83부 4속이었고, 공수위전(公須位田: 동읍내·하일·회현·도선면)은 25결 11부 6속이고, 수어둔(守禦屯: 광일·광이·도선면)은 25결 36부 1속이다. 이 외에 의소묘위전(懿昭墓位田) 80결, 원릉위전(元陵位田) 64결 41부 8속과 2개소 모호(募戶)의 복호결 각기 56결, 소촌역(召村驛)과 진부호(津夫戶) 등과 4개 면의 춘복(春卜) 220결 2부 9속이다. 따라서 재결(在結)에서 통재결(統灾結) 1,645결을 제외한 1,735여 결이 전세실결(田稅實結)이 된다.

『여지도서』에 의하면 고성의 조적곡(糶糶穀)은 원회미(元會米)가 209석 5두 4승 2홉 9

5) 김현구, 앞의 논문, 12쪽 참조.

| 구분 | 마암 | 구만 | 회현 | 광일 | 광이 | 도선 | 以上在合 |
|-----|----------------|----------|----------|---------------|------------------|---------------|------------|
| 結摠 | 378-24-1 | 356-89-8 | 293-72-1 | 378-58-8 | 262-12-* | 261-53-9 | 4,170-64-3 |
| 免頃 | 21-80-4 | 5-36-6 | 8-32-2 | 100-64-1 | 166-23-2 | 123-42-* | 790-70-2 |
| 統屯 | 21-80-4 | 5-36-6 | 4-47-9 | 29-65-2 | 20-73-7 | 22-49-6 | 230-83-4 |
| 公須位 | | | 3-84-3 | | | 2-5-8 | 25-11-6 |
| 守禦屯 | | | | 8-91-3 | 2-50-* | 13-94-8 | 25-36-1 |
| | | | | 水牛島 *-52-8 | 於儀峙 *-57-* | 牛古介 1-99-* | |
| | | | | 4-**-* | 南村鎮募戶 56-**-* | 大昆里 6-87-2 | |
| 春卜 | | | | 57-54-8 | 86-42-5 | 76-5-6 | |
| 在結內 | 永惠宮 50-**-* | | | | | | |
| 在結 | 356-43-7 | 351-53-2 | 285-39-9 | 286-94-7 | 95-88-8 | 138-11-9 | 3,380-19-4 |
| 災結 | 171-64-2 | 149-49-4 | 85-23-9 | 176-70-2 | 117-55-5 | 67-80-9 | 1,645-17-7 |
| 實結 | 184-79-5 | 202-3-8 | 200-16-* | 110-24-5 | ? | 70-31-* | |

작이고, 잡곡은 10석 8두 6승 8홉이었다. 진색미(賑色米)는 6석 3두 6승이고, 잡곡은 1,002석 6두 8승이었다. 상평청미(常平廳米)는 11두 9홉이고, 잡곡은 2,634석 14두 3승 6홉이고, 사진미(私賑米)는 6석 8두 6승 4작이고, 잡곡은 797석 9두 7승 9홉 4작이었으며, 별회미(別會米)는 30석 11두 5승이고, 잡곡은 2,758석 12두 7승이었다.

고성의 환곡은 1893년의 경우 통영각곡(統營各穀)이 쌀 13,111여 석, 보리 1,599여 석, 순영구관곡(巡營句管穀)이 149여 석, 우병영곡(右兵營穀)이 1석 남짓으로 통영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고성현의 환곡 운영 특징은 18세기 이래 통영구관곡이 환총의 60~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통영의 재정수요 확대와 그 보전책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밖에 관하 5개 진(鎭)의 환곡 분담까지 추가되고 있었다.

한편 균역법 시행 후 고성에서 부담하고 있던 해세전(海稅錢)은 『여지도서』(1759년)에 의하면 선부각항세전(船釜各項稅錢)이 2,687냥 7전 8푼을 균청에 납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고성현읍지』(1785년)에 의하면 실상납전은 1,941냥 5전 2푼으로 조정되고 있다. 이것은 각 포구에서 어물을 거두던 것을 없애고 원세(元稅) 중 십일조를 본관에 이급(移給)하면서 나타난 변화로 보인다. 19세기 말 고성현의 해세전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19세기 말 고성현의 해세전 내역>

| 시기 \ 내역 | 1890년 | 1894년 |
|------------|------------------------------|--------------------|
| 各樣稅錢 | 3,976.44 | 3,976.44 |
| 在錢 | 2,510.44 | 2,510.44 |
| 什一條 | 251.04 | 251.04 |
| 進上時糧米價 | 17.09 | 17.09 |
| 上納馱價 | 132.80 | - |
| 合錢(百一條 포함) | 實上納錢 1,601.68 統營劃給 530.25 | - (統營 2,264.73) |

고성현이 부담하고 있던 군역은 1891년 거민 원호(元戶) 6,728호 중 통영과 진역응탈호(鎭驛應脫戶)를 제외한 실호가 1,817호였다. 경사군목(京司軍木)이 9동 1필 20척, 군전 2,125냥 9전과 장악원의 악공미(樂工米) 7석 여가 있으며, 통영과 순영, 그리고 지세포의 방전이 3,063냥 7전 6푼이었다. 『부역실총』에 따르면 경사군목이 18동 30필, 각종 군전이 1,749냥 3푼, 군보미·태가 1,410석 11두 9도이고, 감영의 배지전(陪持錢) 80냥, 통영의 유황군전(硫黃軍錢)과 아병전(牙兵錢) 76냥, 제조미(除操米) 56석 9두, 우후영(虞候營)을 포함한 수군목(水軍木) 29동 10필이다.

<18·19세기 고성현 군총(軍摠)의 변화>

| 내역 \ 시기 | 京案付 | 監營屬 | 統營屬 | 右兵營屬 | 金海鎭管 | 本縣 | 外案付 | 總軍額 |
|---------|-------|-----|-------|------|------|-------|-------|-------|
| 1786 | 1,423 | - | 3,082 | 727 | - | - | 3,089 | 5,232 |
| 1895 | 1,795 | 451 | 1,226 | 241 | 716 | 2,106 | 4,740 | 6,353 |

<고성의 군정 운영 현황>

| 구분 | | 인원 | 구분 | | 인원 |
|----------------|----------|----|--------|--------------------|-----|
| 훈련도감 (訓練都監) | 포수보(砲手保) | 30 | 병영(統營) | 삼질파임말보 (三秩把任末保) | 52 |
| | 군향보(軍餉保) | 31 | | 사부(射夫) | 587 |
| 어영청 | 정군(正軍) | 47 | | 친병(親兵) | 565 |

| | | | | | |
|--------------|--------------------|-----|------------|------------|-------|
| (御營廳) | 자보(資保) | 50 | 우수영(右水營) | 별아병(別牙兵) | 34 |
| | 미보(米保) | 143 | | 포수(砲手) | 256 |
| | 미포군(米布軍) | 800 | | 차비군(差備軍) | 9 |
| 禁衛營 | 정군(正軍) | 47 | 병영(兵營) | 주진군(主陣軍) | 55 |
| | 자보(資保) | 50 | | 별대마병(別隊馬兵) | 22 |
| | 미보(米保) | 94 | | 별대보(別隊保) | 42 |
| | 호연대(扈輦隊) 복직(祿直) | 37 | | 별포수(別砲手) | 47 |
| 병조(兵曹) | 기병(騎兵) | 1 | 총계 | 친병(親兵) | 27 |
| | 보병(步兵) | 6 | | 아병(牙兵) | 5 |
| | 여정(餘丁) | 1 | | 봉군(烽軍) | 510 |
| 공조(工曹) | 장인(匠人) | 59 | 속오마병(東伍馬兵) | 153 | |
| | 악공(樂工) | 9 | 마군보(馬軍保) | 93 | |
| 장악원 (掌樂院) | 악생보(樂生保) | 9 | 보병(步兵) | 500 | |
| | 방군(防軍) | 792 | | | |
| | 방군보(防軍保) | 169 | | | |
| | | | | 총계 | 5,312 |

1794년에 작성된 『부역실총』은 지방재정 규모를 살펴보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부역실총』에 수록된 재원은 해당 군현에서 중앙으로 상납하는 ‘경사상납(京司上納)’과 해당 군현에서 사용하는 ‘본관봉용(本官捧用)’, 해당 군현에서 다른 군현이나 감영 등 다른 지방으로 보내지는 ‘타관이획(他官移劃)’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 중에서 ‘본관봉용’ 규모는 부세 총량의 20~30% 내외였다. 지방재정의 비율이 총량에 대비해 낮게 책정된 이유는 일련의 중앙집권적인 재정정책은 각급 국가기관의 세금 징수권을 제한하고 지방의 군현으로 하여금 국가재원의 징수권 일부와 그에 소요되는 재정경비를 부담하게 하였다. 『부역실총』에 나타난 ‘타관이획’은 상급 관서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관봉용’은 가장 기본적인 지방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다. 고성에서 마련한 ‘각영상납’ 및 ‘본관봉용’의 세목과 그 액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부역실총』에 수록된 고성현의 ‘各營上納秩’의 세목과 수세액 >

| 구분 | 세목 | 액수 | 비고 |
|------------|----------|-------|-------------|
| 감영 (監營) | 모분지(牟分紙) | 150束 | 價租 民戶 收捧 |
| | 점미(粘米) | 1석 3두 | 春秋分定 別會穀 換買 |
| | 진임(眞荏) | 2석 | |

| | | | | |
|----------------|------------|-----------------|-----------------|------------|
| | 홍합(紅蛤) | 2두 | 春秋 例納 | |
| | 표고(蓼古) | 10근 12냥 | | |
| | 유자(柚子) | 200개 | | |
| | 조소(條所) | 12巨里 | | |
| | 황밀(黃蜜) | 9근 | | |
| | 초석(草席) | 27立 | | |
| | 협판(挾板) | 14部 | | |
| | 백작약(白芍藥) | 6냥 | | |
| | 천초(川椒) | 2두 1승 | | |
| | 작설(雀舌) | 1근 10냥 | | |
| | 천문동(天門冬) | 4근 10냥 | | |
| | 맥문동(麥門冬) | 3근 12냥 | | |
| | 절선죽(節扇竹) | 2만 6천 9백 40片 | | 別會穀 換貿 |
| | 어익피(魚翼皮) | 100장 | | 補民當納 |
| | 구중피(口中皮) | 100장 | | |
| | 배지전(陪持錢) | 80냥 | | 補民庫錢 取殖 輸納 |
| 동영 (統營) | 수미(需米) | 500석 | 春秋 分納 | |
| | 황죽(篁竹) | 600箇 | 竹田 斫納 | |
| | 저모(猪毛) | 1근 | 倉色 當納 | |
| | 축룡(柵籠) | 38駄 1隻 | 僧徒 當納 | |
| | 절선죽(節扇竹) | 5천 9백 37片 | 民戶收捧 儲置會減 | |
| | 제조미(除操米) | 56석 9두 | 水操時 親兵中 當納 | |
| | 수군목(水軍木) | 8同 34疋 | 駄價雜費 并錢 86냥 8전 | |
| | 硫黃軍錢(유황군전) | 26냥 | | |
| | 아병전(牙兵錢) | 50냥 | | |
| | 해세전(海稅錢) | 3천 3백 85냥 5전 7푼 | | |
| 우후영(虞候營) | 수군목(水軍木) | 20동 26궐 | 駄價雜費 并錢 205냥 2전 | |
| 우병영 (右兵營) | 저모(猪毛) | 7냥 | 都砲手 當納 | |
| | 구중피(口中皮) | 16장 | 浦民 當納 | |
| | 주진군전(主鎭軍錢) | 10냥 | | |
| | 별포수전(別砲手錢) | 73냥 6전 | | |
| | 양여군전(良餘軍錢) | 75냥 | | |
| | 취타수전(吹打手錢) | 27냥 5전 | | |
| | 옹장전(甕匠錢) | 12냥 | | |
| | 물선군전(物膳軍錢) | 44냥 | | |
| | 모군전(募軍錢) | 6냥 | | |
| 김해진영 (金海鎭營) | 후백지(厚白紙) | 15속 | 年例備納 儲置會減 | |
| | 황필(黃筆) | 4柄 | | |
| | 백필(白筆) | 6병 | | |
| | 진묵(眞墨) | 3丁 | | |
| | 송묵(松墨) | 2정 | | |

< 『부역실총』에 수록된 고성현의 ‘본관봉용질’의 세목과 수세액 >

| 세목 | 액수 | 비고 |
|--------------|------------|------------|
| 수미(需米) | 300石 | 民戶 收捧 |
| 사객지공미(使客支供米) | 25석 | |
| 아록위미(衙祿位米) | 22석 | |
| 둔세조(屯稅租) | 10석 14두 | |
| 둔세태(屯稅太) | 9석 12두 8승 | |
| 화세전(火稅錢) | 46냥 6전 4푼 | |
| 장세전(場稅錢) | 108냥 | |
| 해세전(海稅錢) | 384냥 7전 8푼 | |
| 전관조(傳關租) | 108석 | |
| 소목(燒木) | 1,349단 | |
| 탄(炭) | 81석 3두 | |
| 보민조(補民租) | 236석 | |
| 보민모(補民牟) | 236석 | |
| 보민전(補民錢) | 875냥 5전 | 取殖防役 |
| 생치(生雉) | 139首 | 結夫 收捧 |
| 생계(生鷄) | 139수 | |
| 생초(生草) | 539단 | |
| 고초(藁草) | 539단 | |
| 군관제번전(軍官除番錢) | 80냥 | 軍器修補 |
| 식정(食鼎) | 14坐 | 店民處 捧用 |
| 피지(皮紙) | 25束 10張 | 僧徒處 捧用 |
| 최혜(草鞋) | 30竹 | |
| 책의(冊衣) | 15卷 | |
| 상자(箱子) | 24部 | |
| 지중(紙重) | 1,000斤 | 僧徒處 給價租 捧用 |

대개의 세목은 민호에서 수봉하였으며 점민이나 승도들에게 부담시키는 것도 있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 고성현의 민인들이 부담하던 조세 가운데 통영의 둔세조(屯稅條)를 제외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세기 고성현의 세입 현황>

| 구분 | | 쌀 | 콩 | 동전 | 무명 |
|-----------|----|-------|-----|-------|------|
| 京司上納秩 | | 4,84 | 213 | 2,125 | 9-01 |
| 各營 上納秩 | 監營 | | | 742 | |
| | 統營 | 500 | | 1,088 | |
| 各邑鎮 下納秩 | | | | 1,233 | |
| 本官 捧用秩 | | 325 | | | |
| 합계 | | 5,109 | 213 | 5,188 | 9-01 |

전세와 대동미, 영·관수미와 결전(結錢)의 액수는 18세기에 비하여 증가한 반면에 신역(身役)에 해당되는 동전과 무명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밖에 진공(進貢)에 있어서도 어물과 인삼을 비롯한 약재 등의 부담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고성주민들에게 있어 실제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잡세의 명목이 다양하게 불어나고 있는 것이었다. 호구와 민결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잡세의 부과와 징수에 따른 폐단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가중되었다.

1893년 고성의 간향활리(奸鄉猾吏)가 부정한 명색으로 함부로 내려 준 응배전(應排錢)은 3,280여 냥에 이르렀고, 이것은 매 호당 2냥 9전 9푼을 부담하는 것이었다. 고성부사로 부임한 오형묵은 향민의 등장(等狀)에 따라 이것을 재조사하여 호당 1냥 7전 8푼으로 감액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미 관례화되어 잡세 명목을 쉽게 고칠 수 없었고, 부세수취의 실무 담당자인 이서(吏胥)들의 개입과 작폐로 인한 누적된 폐해를 바로 잡기는 어려웠다. 이와 같은 폐단은 결국 1894년 고성민요가 발생하는 단서로 작용하고 있다. 19세기 말 고성현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징수하고 있던 폐단의 일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889~1894년간 고성현 남배전(濫排錢) 현황>⁶⁾

| 연도 내역 | 1889 | 1890 | 1891 | 1892 | 1893 | 1894 | | 합계 |
|--------------|--------|----------|----------|----------|----------|----------|----------------|------------------------|
| 大同錢 (未排錢) | 300 | 283.77 | 695.54 | 92.43 | 1,656.28 | 1,365.18 | 作夫都書 員(114) | 4,493.20 (4,507.20) |
| 司倉結 無利錢 | 408.66 | 1,640.79 | 1,673.08 | 1,619.13 | 1,837.4 | | 吏役廳 (200) | 7,179.06 (7,379.06) |

6) 김현구, 앞의 논문, 19쪽 참조.

| | | | | | | | | |
|-----------|----------------|----------|----------|----------|----------------------|---------------------------------|-----------------------------------|------------------------|
| 民庫錢 | 168.5 (미배전) | 50.9 | 50.8 | 269.54 | 251.6 | 2,310.96 | 賑資色 (30) | 3,102.30 (3,132.30) |
| 兵房錢 | | 573.35 | 1,373.45 | 319.99 | 1,117.3 | 1,110.07 | 各年合條 中辛卯充 補錢(1,500) | 4,494.16 (5,994.16) |
| 官廳 掾弊錢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京主人加 排錢(2,467) | 5,000 (7,604.5) |
| | | | | | 各面書 員兵料 錢(900) | 人吏廳復 戶1百結3 年都結 (6,000) | 巡主仁加 排錢(2,4 67) | 9,367 |
| | | | | | 戶籍戶 口減條錢 (260) | 癸巳各面 書員未俵 災錢(1,000) | 壬辰區處 錢中查得 各項條錢 (2,022.5) | 3,282.5 |
| 합계 | 1877.16 | 3,548.81 | 4,792.87 | 3,301.09 | 7,022.58 | 20,724.21 | (15,938.0) | 41,266.72 |

관례화된 주요 세목은 모두 경사 및 운영의 공문에 의거한 것이었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이속(吏屬)이 상납의 부족분을 빙자하여 매년 향회에서 제급(題給)을 받아 민간으로부터 거둔 것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고성민요가 발생하였을 때 오형목이 순·통·병영(巡統兵營)에 발송한 절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절목에는 면세결이 많은 포도면·상서면·도선면은 반호반결(半戶半結)을 시행하지 말라는 것과 각종 공전(公錢)의 처리를 위해 신설되었던 도봉소(都捧所)를 영구히 없애고, 향회를 영구히 혁파하고, 민고도감(民庫都監)과 색리는 혁파하고 소관 업무는 해당 색리에게 넘긴다는 것 등이다. 이를 통해서도 고성의 민인들이 겪고 있던 가장 큰 민폐의 요인은 잡세의 증대와 수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부정이었다.

한편 19세기 후반 이래 전정·군정·환곡의 부세 수취와 함께 각종 징세기구의 확대와 아울러 담당 이서들의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고성의 경우 18세기 단계에는 객사, 동헌, 향사당, 군청(軍廳), 장관청(將官廳), 인리청(人吏廳), 군기청(軍器廳) 정도의 건물들이 있었다. 19세기에는 이들 건물 외에 전제소(田制所), 형리청(刑吏廳), 공방소(工房所), 지인청(知印廳), 사령청(使令廳), 관노청(官奴廳) 등이 늘어나는가 하면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창고는 사창, 大同庫, 官廳庫, 진휼창, 육·수군기고(陸水軍器庫), 통영창(統營倉), 제민창(濟民倉), 별향창(別餉倉) 외에 18곳의 사창(社倉)이 각 면에 신설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조선후기 고성현의 부속 기구 증감 상황>

| 연도 | 1759 | 1786 | 1855 | 1870 | 1893 | 1895 |
|-----|------|------|------|------|------|------|
| 公廨數 | 6 | 7 | 7 | 13 | 다수 | 7 |
| 倉庫數 | 6 | 7 | 3 | 5 | 6 | - |

각종 용도의 공해가 신설 또는 확대되면서 이서(吏胥)의 증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다음의 도표를 통해 19세기 중엽 이후 고성의 서리 이액(吏額)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후기 고성현의 이액 변화>

| 직임 연도 | 座首 | 別監 | 軍官 | 人吏 | 知印 | 使令 | 官奴 | 官婢 | 軍牢 | 합계 |
|----------|----|----|----|----|----|----|----|----|----|-----|
| 1759 | 1 | 2 | 30 | 30 | 10 | 15 | 25 | 21 | - | 134 |
| 1786 | 1 | 2 | 30 | 30 | 10 | 15 | 10 | 10 | - | 108 |
| 1855 | 1 | 2 | 30 | 40 | 15 | 20 | 13 | 11 | - | 132 |
| 1870 | 1 | 2 | 30 | 62 | 10 | 15 | 10 | 10 | 7 | 148 |
| 1894 | 1 | 2 | 30 | 54 | 18 | 17 | 20 | 16 | - | 158 |

좌수와 별감 이외에 이른바 삼공형인 호장·이방·수형리를 비롯하여 군역 관련자로 병방색(兵房色), 수륙세초색(水陸歲抄色), 지장색(支裝色), 지응색(支應色), 육군기색(陸軍器色), 수군기색(水軍器色), 어영색(御營色), 금위색(禁衛色), 친병색(親兵色), 주사색(舟師色)이 있었었다. 부세 수취와 관련해서는 대동색(大同色), 진상색(進上色), 균역색(均役色), 관청색(官廳色), 내창색(內倉色), 사창색(司倉色), 고마창색(雇馬倉色), 구창색(舊倉色), 포량색(砲糧色), 시탄색(柴炭色) 등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와 같은 수많은 이임직은 봉록이 보장되지 않은 채 지방관청 재정 운영에 기생하면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이서층의 포핍(逋欠)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어려웠다. 여기에다 각 면동(面洞)의 서원(書員)과 면주인(面主人), 동임(洞任) 등은 이들과 상호 결탁하여 많은 폐단을 발생시켰다.

제 3절 교통과 통신

조선왕조는 건국 초에 개성에서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도성 내의 도로설비는 물론, 전국의 교통망을 한양을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있다. 조선초기의 교통정책은 도로의 건설과 관

리 및 도로의 넓이 등에 이르기까지 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경국대전』에 구체적으로 실려 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도성내 도로는 대중소로의 3종류가 있고, 전국의 도로 망은 모두 서울로 연결되었으며, 역(驛)·원(院)·참(站) 등의 교통시설도 이러한 도로에 따라 설치되었다. 조선은 수도 한성으로부터 크게 6개 대로가 있었고, 후기에는 10대 대로로 확대하였다. 대로는 서울~개성, 서울~죽산, 서울~직산, 서울~포천에 이르는 도로가 중심이었고, 중로는 이들 대로와 연결된 개성~중화, 죽산~상주진천, 직산~공주전주, 포천~회양, 서울~양근간이고, 소로는 이들과 연결된 외방의 각종 도로이다. 도성 내에 있어서의 도리(道里)의 기준점은 궐문(闕門)으로 하고 있으며, 각 지방과의 도리 기준점은 성문을 기점으로 하였다. 전국 각 지방으로 뻗은 의주로(義州路: 한양~의주)·우로(右路: 한양~해남)·중로(中路: 한양~통영)와 강화로 이어지는 교통로는 승례문이 기점이었으며, 관북로(關北路: 한양~경흥)·관동로(한양~평해)·좌로(左路: 한양~봉화, 한양~동래) 등은 흥인문이 기점이었다.

이러한 도로를 관리하기 위해 주요 지점에 찰방역을 두어 주변 역을 관할하도록 하였다. 조선왕조의 역참(驛站) 제도는 고려의 것을 계승하면서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새롭게 정비하였다. 하나의 찰방역에는 많게는 30개, 적게는 5개의 역을 관할하였는데, 이러한 관할 단위를 역도(驛道)라고 하였다. 각 역도에는 찰방(察訪) 또는 역승(驛丞)을 파견하여 관할케 하였다. 그리고 역에는 그 규모에 따라 배치된 마필수가 달랐다. 그리고 마필에도 상등·중등·마하등·마태마 등의 등급이 있었다.

『만기요람』에 의하면 전국에 41개의 찰방역과 504개의 역이 있었으며, 경상도에는 좌도에 6개의 역도가 있었고, 우도에는 5개의 역도가 있었다. 고성은 경상남도의 7개 역도 가운데 소촌도에 소속되어 있었다. 소촌도와 이에 속한 군현과 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상도 소촌역도(召村驛道)와 소속 역>

| 驛道名 | 군현명 | 역명 | 현재 위치 | 비고 |
|-----|-----|--------|-----------|---------------|
| 召村道 | 진주 | 소촌(召村) | 문산면 소문리 | |
| | | 평거(平居) | 진주시 평거동 | |
| | | 문화(文和) | 고성 상리 무선리 | |
| | | 부다(富多) | 사봉면 부계리 | |
| | | 영창(永昌) | 고성 영현 대법리 | (대가면 송계리 부근?) |
| | 사천 | 동계(東溪) | 사천읍 고읍리 | |
| | | 관율(官栗) | 사천읍 두량리 | |

| | | | |
|----|--------|-----------|----------|
| 고성 | 송도(松道) | 고성읍 송학리 | |
| | 구허(舊墟) | 광도면 노산리 | |
| | 배둔(背屯) | 회화면 배둔리 | |
| 거제 | 오양(烏壤) | 사등면 오량리 | |
| 의령 | 지남(智南) | 마산 진부 지산리 | 知南 또는 指南 |
| 곤양 | 완사(浣紗) | 가례면 운암리 | 浣沙 또는 完沙 |
| | 양포(良浦) | 곤명면 정곡리 | |
| 남해 | 덕신(德新) | 하동 진교 양포리 | |
| 진해 | 상령(常令) | 설천면 덕신리 | |

고성은 진주의 5개 역에 이어 3개 역이 설치되어 있어 관방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 10대로 중 경상남도를 경유하는 것은 제4로인 ‘동래로’와 제10로인 ‘통영로’였다. 『대동지지』(1864년)에 근거하여 경로를 정리하면 삼례역-전주-남원 [여원치] -운봉 [팔랑치] -함양-사근역-산청-오조점-단성-소남진-진주-관율역-사천-감차-고성-통영까지로 사근도(沙斤道)와 소촌도 관할이었다. 주변에는 함양의 사근도 찰방역과 제한역(躡閑驛), 산청의 정곡역(正谷驛), 단성의 신안역(新安驛), 사천의 관율역과 동계역, 진주의 문화역, 고성의 구허역 등이 있었다.

고성현에 설치되었던 역원은 『여지도서』에 의하면 3곳이 있었다. 배둔역(背屯驛)은 현의 북쪽 27리에 있으며, 남쪽으로 송도역이 26리이고, 북으로 진해 상령역(常令驛)과의 거리는 30리이다. 중마 2필, 북마 8필, 역리 68인, 노 15명, 비 10명을 두었다. 송도역(松道驛)은 현의 북쪽 2리에 있으며, 남쪽으로 구허역과는 30리이고, 서쪽으로 진주 영창역(永昌驛)과도 30리 거리이다. 기마 5필, 북마 6필, 역리 25인, 노 3명, 비 1명을 두었다. 구허역(丘墟驛)은 현의 동쪽 30리에 있고, 남쪽으로 거제 도양역과는 30리 거리이다. 대마 1필, 기마 4필, 역리 33인을 두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배둔역은 진해와 연결하고, 송도역은 진주, 구허역은 거제와 연결하기 위해 설치한 것을 알 수 있다.

역의 운영경비와 종사자들의 급료지급을 위해 각 역에는 토지가 지급되었으며, 역마 충당을 위해서는 마전(馬田)이 지급되었다. 역마는 중앙에서는 출장관원에게, 지방에서는 중앙에 보고하거나 토산물을 진상할 때 이용되었는데, 이용관원의 품계에 따라 말의 지급수와 말의 등급도 달리하였다. 출장관원이 각 역에서 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증표로 마패가 발급되었다. 마패에는 발행처가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마필수가 말그림으로 새겨져 있었다. 마패의 발급은 중앙에서는 우선 출장관원의 품계에 따라 병조가 문서를 발급하면 상서

원이 마패를 내주었고, 지방에서는 관찰사나 절도사가 가지고 있다가 중앙에 보고하거나 진상을 올려 보낼 때 발급하였다.

한편 공적인 임무를 띠고 지방에 파견되는 관리나 상인, 기타 여행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기 위해 도로 요충지에 원우(院宇)가 설치되어 있었다. 원은 공공적인 시설로서 대체로 30리 거리마다 설치되어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고성현에는 4개의 원이 설치되어 있었다. 도선원(道仙院)은 현의 동쪽 20리 지점에 있었으며, 성산원(城山院)은 현의 북쪽 25리 지점에 있었고, 견내량원(見乃梁院)은 견내량 북쪽 언덕에 있었고, 송정원(松亭院)은 현의 서쪽 18리 지점에 있었다.

그런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 난 이후 관에서 운영하는 원은 점차 감소하고 그 대신 사설인 주막이나 점막(店幕)의 설치가 점차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반영하듯 『여지도서』에 의하면 도선원·성산원·송정원은 폐지된 것으로 나타나고, 견내량원은 통중영(統中營)의 유방군(留防軍)(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봉수는 변경지방의 긴급한 상황을 중앙 또는 변경의 진영(鎭營)에 알리는 통신체제로 주로 군사상의 목적으로 설치되어 운영하였다. 변경지역의 안위를 전고(傳告)할 때는 정세의 완급에 따라 거수(炬數)로서 구별하였다. 『경국대전』에는 해상 또는 육상의 적을 구별없이 5거(五炬)로 규정되어 있었다. 평상시에는 한줄기, 적이 나타나면 두 줄기, 적이 가까이 오면 세 줄기, 적이 침입해 들어오면 네 줄기, 적과 접전하게 되면 다섯 줄기의 연기나 불을 피워서 신호하였다. 만약 전봉(前烽)이 오르지 않거나 풍우(風雨) 등으로 연기와 불빛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봉화대에 상주하는 봉수군이 즉시 다음 봉수에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봉수에는 경봉수(京烽燧)·연변봉수(沿邊烽燧)·내지봉수(內地烽燧)의 3종류가 있었다. 봉수의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으로는 봉수군과 오장(伍長)인 감고(監考), 오원(伍員)이 있었다. 이들은 반드시 봉수대 근방에 거주하는 자로 배속하도록 하였는데, 경봉수·연변봉수·내지봉수에 따라 시설 및 정원에 차이가 있었다. 모든 봉수지에는 오장 1인이 근무하였고, 경봉수(5개소)에는 2명, 연변봉수에는 5인, 내지봉수에는 3인이 근무하였는데, 대체로 10일마다 교대로 임무를 수행하였다.

고성의 봉수는 조선전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변화없이 5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미륵산(彌勒山)봉수는 현의 남쪽 67리 지점 미륵도에 있으며, 동쪽으로 거제 계룡산에 응하고 북쪽으로 우산에 알리며, 서로의 거리는 수로로 25리이다.

우산(牛山)봉수는 현의 남쪽 30리 지점의 해발 325m 봉화산에 있으며 남쪽으로 미륵산에 응하여 서쪽으로 좌이산에 알리며, 서로의 거리는 수로로 30리이고, 북쪽으로 天王岾에 알

리며 서로의 거리는 육로로 30리이다.

천왕점봉수는 현의 북쪽 15리 지점 지금의 대가면 양화리 산 1-1번지 있으며, 남쪽으로 우산봉수에 응하여 동쪽으로 곡산에 알리는데, 서로의 거리는 육로로 30리이다.

곡산(曲山)봉수는 현의 동쪽 20리 지점인 동해면 내곡리에 있으며, 토축하였는데, 높이 316m에 있다. 서쪽으로 천왕점에 응하여 동쪽으로 진해 가을포(加乙浦)봉수에 알리는데 서로의 거리는 수로로 30리이다.

좌이산(佐耳山)봉수는 현의 서쪽 30리 지점인 하일면 송천리에 있으며, 동쪽으로 우산에 응하고 남쪽으로 사랑진 주봉에 응하며, 별도로 북쪽으로 진주 각산(角山)을 바라보며 알리는데 서로의 거리는 육로로 30리이다.

고성 지역에는 해안이면서 변방이라는 지리적인 특징을 감안하여 많은 군사시설이 설치되었다. 대표적인 군사시설로 5곳에 진보(鎭堡)가 설치되어 있었다. 사랑진(蛇梁鎭)에는 무관으로 4품인 만호 1인과 진무 9명, 지인 2명, 사령 6명이 배치되었다. 남쪽으로 70리 되는 거리에 있으며 둘로 쌓은 성은 둘레가 1,251척이며, 높이는 13척이 되었다.

당포진(唐浦鎭)에는 무관으로 4품인 만호 1인과 진무 19명, 지인 9명, 사령 13명이 배치되었다. 현의 남쪽으로 67리 되는 거리에 있으며, 둘로 쌓은 성 둘레가 1,445척이고, 높이는 13척이 되었다.

구소을비포진(舊所乙非浦鎭)에는 무관으로 9품인 별장(別將) 1인과 진무(鎭撫) 17인, 지인(知印) 12인, 사령(使令) 14명이 배치되었다. 현의 서쪽 47리 거리에 있으며, 둘로 쌓은 성의 둘레가 825척이고 높이는 14척으로 권관(權管)을 파견하여 지켰다.

남촌진(南村鎭)은 무관으로 9품인 별장 1인과 진무 15명, 지인 7명, 사령 12명을 배치하였다. 현의 동쪽 20리 거리에 있는데, 광해 6년에 현의 남쪽 도선(道善)에 진을 처음 설치하였다가 광해 11년에 현의 동쪽 적진포(積珍浦)에 소모진(召募鎭)을 옮겨 설치하면서 남촌진이라 하였으며, 별장을 파견하여 지키게 하였다.

삼천진(三千鎭)은 무관으로 9품인 권관 1인과 진무 16명, 지인 7명, 사령 13명이 배치되었다. 현의 남쪽 55리 거리에 있는데, 광해 11년 진주 삼천진으로부터 미륵산 아래에 소모진을 옮겨 설치하고 삼천진이라 하였으며, 권관을 파견하여 지키게 하였다.

제 4절 조선시대 고성 지방 수령의 교체

조선시대의 수령은 부윤·대도호부사·목사·도호부사·군수·현령·현감 등이다. 그 품계는 종2품에서 종6품까지에 걸쳐 있었다. 읍격(邑格)과 수령의 품계는 호구와 전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행정상으로는 모두 관찰사의 관할 아래 있었다. 수령의 임무는 칠사가 말해 주듯이 권농·호구증식·군정·교육장려·징세조역·소송간평(訴訟簡平)·풍속교정이었다. 수령의 하부 행정 체계로는 향리와 면리임(面里任)이 있고, 자문 및 보좌 기관으로 유향소가 있었다.

조선시대 수령의 교체 사유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임기만료로 교체되는 과체(瓜遞), 품계나 직급 상승으로 인해 옮기는 것을 승체(陞遞), 중앙의 관직으로 옮기는 것을 내체(內遞), 3사(三司) 또는 각·원(閣院)으로 승진되어 부르는 것을 소체(召遞), 품계는 동격이지만 다른 고을로 옮기는 것을 환체(換遞)라고 구분하였다.

내용별로 구분하면 수령 자신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두는 사체(辭遞), 관찰사가 근무성적을 고과하여 하등을 받아 교체되는 폼체(貶遞), 재직 중 크고 작은 과실로 인해 파면당하는 파직, 중앙에서 수령의 과실을 적발하여 장계를 내려 파면시키는 경과(京罷), 순찰사나 암행어사 또는 순무사 등의 암행으로 과실을 적발하여 장계를 올려 파면하는 계과(啓罷), 천재지변 등으로 말미암아 농사 등에 큰 피해가 있을 때 파직되는 재상과(災傷罷), 재임 중 부모상으로 인해 사직하는 분상(奔喪), 품계의 승급으로 승진되어 자리를 옮기는 이배(移拜) 등이 있다.

부임한 수령이 임기를 마치고 교체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고성의 경우 『고성현읍지』 선생안조(先生案條)에 의하면 명종 9년(1554)에서 정조 8년(1784)까지 230년 동안 151명의 현령이 교체되었는데, 이 중에서 임기만료로 교체된 자는 16명으로서 전체의 10.6%에 해당한다. 수령이 교체될 때 같은 날, 또는 며칠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대개 1~2개월이 소요되거나 길게는 4~6개월이 지나서야 새로운 수령이 부임하기도 하였다.

고성 수령의 재임기간은 대체로 1년 4개월 정도였다. 이와 같이 법정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수령교체는 많은 폐단을 발생시켰다. 우선 그 폐단은 수령이 바뀔 때마다 행해지는 신영예절(新迎禮節)을 자주 치루어야 하는데서 찾아 볼 수 있다. 신영예절은 신임 수령이 도입하기 전에 그를 위해 치르는 의례적인 행사로 지장봉진(支裝封進)·아사수리(衙舍修理)·기치영접(旗幟迎接)·풍약대후(風約待候)·중로문안(中路問安)이다. 지장봉진은 그 지방의 물산을 예물로 신임 수령에게 올리는 것이고, 아사수리는 관아를 새로 단장하는 것이며, 기치영접은 속오군을 읍내에 동원하여 기치를 들고 10여일 정도 머무르게 하는 것이고, 풍약대후는 풍헌(風憲)·약정(約正)·장관 등이 수령의 명령을 듣기 위해 읍내에 들어와 기다리는 것이고, 중로문안은 향리들이 수령이 도입하는 곳으로 계속 사람을 보내 문안하는 것으로 인력동원, 경비부담 등은 지역 민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짧은 기간에 발생하는 수령 교체는 수령의 지위를 안정시켜 주지 못하였고, 이것은 지방 실정을 파악하여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 토착 세력인 향리들을 감독하고 단속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향리들은 수령과 결탁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을 자행하거나 민인들을 괴롭혔다.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부정부패와 기강 해이는 수많은 폐단을 자아냈다.⁷⁾ 결국 민인들의 누적된 사회적 불만은 18세기 말 이래 빈발하는 농민봉기로 분출되었다.

조선시대 고성의 수령을 지낸 인물은 240여 명이다. 재임기간과 출신지, 교체사유 등이 확인되는 인물을 230여 명인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⁸⁾

<조선시대 고성지역 수령의 교체 상황>

| 연번 | 성명 | 재임기간 | 출신지 | 교체사유 |
|----|-----|-----------------|-----|----------|
| 1 | 辛處康 | | | |
| 2 | 李運 | | | |
| 3 | 成秀才 | | | |
| 4 | 趙金虎 | | | |
| 5 | 李樟 | 1554.02~1555.07 | | 靈巖以倭變 拿去 |
| 6 | 閔榛 | 1555.08~1557.01 | 京 | 遞 |
| 7 | 朴世賢 | 1557.02~1559.05 | 寧海 | 罷 |
| 8 | 元光世 | 1559.06~1561.12 | 原州 | 三水郡守 移拜 |
| 9 | 金命堅 | 1562.01~1562.08 | 京 | 軍器判官 移拜 |
| 10 | 崔世權 | 1562.10~1564.09 | 京 | 災傷罷 |
| 11 | 尹孝聘 | | | |
| 12 | 邊悅 | 1564.12~1565.11 | 京 | 奔喪 |
| 13 | 崔汝雨 | 1565.11~1570.12 | 京 | 軍資判官 移拜 |
| 14 | 李璋 | 1571.01~1572.01 | 京 | 罷 |
| 15 | 尹之淑 | 1572.01~1573.02 | 京 | 京罷 |
| 16 | 李 雯 | 1573.04~1573.10 | 忠州 | 京罷 |
| 17 | 安應絢 | 1573.11~1574.09 | 咸安 | 災傷罷 |
| 18 | 李仁傑 | 1574.11~1579.10 | 京 | 國用布餼船罷 |
| 19 | 崔克寧 | | | |
| 20 | 朴仁豪 | 1579.11~1580.10 | 海南 | 災傷罷 |
| 21 | 李 鍾 | 1580.11~1584.03 | 京 | 牧場馬遺失罷 |
| 22 | 李慶祿 | 1584.04~1586.07 | 京 | 慶興府使 移拜 |
| 23 | 尹安性 | 1586.09~1586.12 | 京 | 倭賊犯境不捕罷 |
| 24 | 金絢 | 1587.01~1592.09 | 京 | 以倭賊不勤捕獲罷 |

7) 이원균, 「조선시대의 수령직 교체 실태」, 『부대사학』 3집, 1979.

8) 송종복, 「고성수령의 교체실태와 遺墟에 관한 고찰」, 『문명연지』 제6권 제2호, 2005, 35-68쪽, 참조.

| | | | | |
|----|-----|-----------------|----|-----------|
| 25 | 趙凝道 | 1592.10~1597.03 | 咸安 | 倭船戰敗卒(戰死) |
| 26 | 元典 | 1597.04~1597.07 | 振威 | 罷 |
| 27 | 李大樹 | 1597.08~1598.12 | 清州 | 星州駐察行公罷 |
| 28 | 朴燁 | 1599.02~1600.08 | 三嘉 | 以唐將忽對拿去 |
| 29 | 羅大用 | 1600.09~1601.12 | 羅州 | 奔喪 |
| 30 | 尹佑 | 1602.01~1603.04 | 槐山 | 因御史啓罷 |
| 31 | 尹弘鳴 | 1603.05~1605.10 | 蔚山 | 瓜遞 |
| 32 | 李彥善 | 1605.11~1606.07 | 沔川 | 啓罷 |
| 33 | 趙亨道 | 1606.09~1606.12 | 咸安 | 啓罷 |
| 34 | 鄭如麟 | 1607.02~1608.06 | 羅州 | 奔喪 |
| 35 | 權克烈 | 1608.08~1611.03 | 京 | 瓜遞 |
| 36 | 柳持敬 | 1611.03~1611.08 | 羅州 | 京罷 |
| 37 | 金澡 | 1611.10~1614.04 | 京 | 瓜遞 |
| 38 | 尹三樂 | 1614.04~1614.12 | 升山 | 災傷罷 |
| 39 | 鄭濯 | 1615.01~1616.10 | 陝川 | 進上闕封事 啓罷 |
| 40 | 李日章 | 1616.11~1620.07 | 草溪 | 京罷 |
| 41 | 崔岌 | 1620.09~1623.06 | 益山 | 天啓癸亥 啓罷 |
| 42 | 李克華 | 1623.07~1623.10 | 龍仁 | 啓罷 |
| 43 | 金逵 | 1623.10~1625.09 | 咸平 | 京罷 |
| 44 | 李廷彥 | 1625.10~1627.06 | 京 | 啓罷 |
| 45 | 李惟宗 | 1627.08~1627.10 | 京 | 拿捕 |
| 46 | 全尊性 | 1627.11~1628.01 | 永川 | 啓罷 |
| 47 | 李命雄 | 1628.09~1630.09 | 京 | 修撰 移拜 |
| 48 | 全以性 | 1630.11~1631.11 | 龍宮 | 辭遞 |
| 49 | 李心源 | | | |
| 50 | 崔煜 | 1632.11~1634.02 | 京 | 辭遞 |
| 51 | 金后夔 | 1634.04~1634.12 | 結城 | 貶遞 |
| 52 | 金光宇 | 1635.02~1636.05 | 星山 | 啓罷 |
| 53 | 姜愉 | 1636.08~1637.05 | 堤川 | 啓罷 |
| 54 | 玄太始 | 1637.07~1638.10 | 延安 | 災傷罷 |
| 55 | 崔晚得 | 1639.03~1640.12 | 水原 | 貶遞 |
| 56 | 李晚榮 | 1641.03~1643.11 | 仁川 | 京罷 |
| 57 | 金鎬 | 1644.01~1645.10 | 報恩 | 辭遞 |
| 58 | 李慶相 | 1645.11~1647.12 | 楊州 | 卒于官 |
| 59 | 金楠 | 1648.02~1650.11 | 清州 | 罷 |
| 60 | 呂孝曾 | 1650.12~1652.09 | 星山 | 災傷罷 |
| 61 | 吳燦 | 1652.11~1653.09 | 谷城 | 災傷罷 |
| 62 | 崔應天 | 1653.11~1661.05 | 江陵 | 瓜遞 |
| 63 | 金之聲 | | | |
| 64 | 南夢賚 | 1661.07~1664.02 | 義城 | 臺罷 |
| 65 | 姜時儼 | 1664.03~1664.06 | 靈光 | 統制使 啓罷 |

| | | | | |
|-----|-----|-----------------|----|---------|
| 66 | 柳經立 | 1664.07~1667.01 | 豐基 | 瓜遞 |
| 67 | 姜遽學 | 1667.04~1667.12 | 忠州 | 貶遞 |
| 68 | 柳挺輝 | 1668.02~1668.09 | 安東 | 拿去 |
| 69 | 趙時瑗 | 1668.12~1670.02 | 大邱 | 辭遞 |
| 70 | 李穡 | 1670.04~1670.12 | 開寧 | 卒于官 |
| 71 | 吳聖蒙 | 1671.02~1671.04 | 楊州 | 卒于官 |
| 72 | 金學培 | 1671.05~1671.12 | 安東 | 貶遞 |
| 73 | 張遇一 | 1672.02~1674.07 | 仁同 | 瓜遞 |
| 74 | 孫湍 | 1674.07~1676.03 | 大邱 | 京罷 |
| 75 | 權尙任 | 1676.03~1677.11 | 寧海 | 災傷罷 |
| 76 | 趙世煥 | 1678.02~1678.12 | 京 | 大邱府使 移拜 |
| 77 | 金聖佐 | 1679.02~1680.02 | 義城 | 京罷 |
| 78 | 沈漢弼 | 1680.07~1681.04 | 京 | 御史 啓罷 |
| 79 | 宋光井 | 1681.06~1682.06 | 通川 | 貶罷 |
| 80 | 金集翼 | 1682.08~1683.12 | 松京 | 貶罷 |
| 81 | 李必茂 | 1684.04~1685.06 | 南原 | 貶罷 |
| 82 | 朴世華 | 1685.08~1687.05 | 尙州 | 辭遞 |
| 83 | 楊廷蓋 | 1687.07~1688.02 | 平壤 | 京罷 |
| 84 | 姜山斗 | 1688.05~1688.06 | 宜寧 | 奔喪 |
| 85 | 崔廷龍 | 1688.07~1690.12 | 木川 | 瓜滿 |
| 86 | 權聖大 | 1691.04~1693.06 | 京 | 貶遞 |
| 87 | 崔琬 | 1693.08~1694.11 | 報恩 | 御史 啓罷 |
| 88 | 安民孺 | 1695.02~1695.04 | 京 | 巡撫使 啓罷 |
| 89 | 朱抗道 | 1695.05~1696.06 | 陽智 | 統制使 啓罷 |
| 90 | 韓以源 | 1696.08~1697.09 | 忠州 | 事體 |
| 91 | 辛善浣 | 1697.11~1698.06 | 潭陽 | 御史 啓罷 |
| 92 | 南彥昌 | 1698.08~1699.09 | 龍仁 | 辭遞 |
| 93 | 全起濟 | 1699.11~1700.07 | 槐山 | 貶遞 |
| 94 | 金重泰 | 1700.09~1701.12 | 咸平 | 貶遞 |
| 95 | 李休徵 | 1702.02~1702.11 | 平山 | 奔喪 |
| 96 | 宋道錫 | 1703.02~1705.08 | 保寧 | 瓜遞 |
| 97 | 金萬謹 | 1705.08~1705.08 | 京 | 龍宮縣監 移拜 |
| 98 | 金稷童 | 1705.08~1706.05 | 公州 | 御史 啓罷 |
| 99 | 尹東魯 | 1706.08~1707.01 | 昌寧 | 統制使 啓罷 |
| 100 | 李泰顯 | 1707.03~1707.08 | 松京 | 臺罷 |
| 101 | 趙以進 | 1707.10~1709.04 | 京 | 辭遞 |
| 102 | 李天駿 | 1709.07~1711.11 | 稷山 | 瓜遞 |
| 103 | 黃燦 | 1711.11~1714.05 | 木川 | 瓜遞 |
| 104 | 洪道達 | 1714.05~1714.12 | 尙州 | 貶遞 |
| 105 | 趙鳳徵 | 1715.03~1716.03 | 安東 | 以身病遞 |
| 106 | 嚴漢重 | 1716.03~1716.12 | 京 | 貶遞 |

| | | | | |
|-----|-----|-----------------|----|---------------------|
| 107 | 金近思 | 1717.01~1717.06 | 龍宮 | 京罷 |
| 108 | 朴壽仁 | 1717.10~1720.02 | 京 | 京遞 |
| 109 | 李之彬 | 1720.08~1720.12 | 京 | 啓罷 |
| 110 | 金命衡 | 1721.06~1723.08 | 泰仁 | 御史 啓罷 |
| 111 | 李碩聃 | 1723.10~1725.01 | 結城 | 鎭海縣監 換拜 |
| 112 | 柳時模 | 1725.01~1725.03 | 京 | 以補外鎭海縣監 換拜 因臺評事歸 |
| 113 | 李尙純 | 1725.04~1726.12 | 京 | 都政遞 |
| 114 | 金相漢 | 1727.01~1727.04 | 京 | 卒于官 |
| 115 | 楊致遠 | 1727.06~1729.07 | 清安 | 瓜遞 |
| 116 | 申玟 | 1729.09~1729.12 | 京 | 奔喪 |
| 117 | 洪以源 | 1730.02~1730.12 | 南陽 | 京罷 |
| 118 | 金東俊 | 1731.01~1732.05 | 泰谷 | 卒于官 |
| 119 | 許錫 | 1732.08~1733.12 | 金山 | 貶罷 |
| 120 | 李行敏 | 1734.04~1734.09 | 京 | 以試官罷場事罷 |
| 121 | 金聖鎔 | 1734.11~1736.12 | 仁同 | 瓜遞 |
| 122 | 安相五 | 1737.02~1737.10 | 京 | 以誤薦事 京罷 |
| 123 | 李錫佐 | 1738.01~1738.12 | 清州 | 貶罷 |
| 124 | 李再新 | 1739.02~1740.02 | 京 | 統制使 啓罷 |
| 125 | 洪若水 | 1740.03~1742.12 | 牙山 | 瓜遞 |
| 126 | 李晉吉 | 1742.12~1744.07 | 清州 | 貶遞 |
| 127 | 鄭徹選 | 1744.09~1744.12 | 濟州 | 貶罷 |
| 128 | 申思民 | 1745.03~1745.10 | 京 | 統制使 啓罷 |
| 129 | 韓德升 | 1745.10~1746.08 | 水原 | 啓罷 |
| 130 | 沈激 | 1746.09~1749.05 | 清州 | 瓜遞 |
| 131 | 李徵淳 | 1749.05~1751.08 | 利川 | 瓜遞 |
| 132 | 閔百範 | 1751.08~1751.11 | 扶餘 | 奔喪 |
| 133 | 金紀 | 1752.08~1752.12 | 海州 | 貶罷 |
| 134 | 趙世選 | 1753.06~1754.03 | 京 | 貶罷 |
| 135 | 趙台祥 | 1754.06~1754.06 | 京 | 京罷 |
| 136 | 李心源 | 1754.06~1756.01 | 京 | 校理 移拜 |
| 137 | 閔源 | 1756.02~1757.06 | 通津 | 貶罷 |
| 138 | 任毅中 | 1757.12~1759.09 | 廣州 | 京罷 |
| 139 | 金仁權 | 1759.10~1760.02 | 平壤 | 奔喪 |
| 140 | 鄭雲濟 | 1760.03~1762.05 | 京 | 御史 啓罷 |
| 141 | 李宅胄 | 1762.05~1763.05 | 溫陽 | 御史 啓罷 |
| 142 | 朴弼遠 | 1763.05~1763.07 | 京 | 以書牧官時事 遞 |
| 143 | 崔崑 | 1763.07~1765.06 | 星州 | 貶罷 |
| 144 | 金樂洙 | 1765.06~1767.12 | 京 | 瓜遞 |
| 145 | 柳成模 | 1768.06~1769.01 | 京 | 校理 移拜 |
| 146 | 鄭弼巨 | 1769.05~1771.10 | 咸平 | 瓜遞 |

| | | | | |
|-----|-----|-----------------|----|---------|
| 147 | 徐秉德 | 1771.10~1772.06 | 大興 | 貶遞 |
| 148 | 李思祚 | 1772.07~1772.08 | 京 | 京遞 |
| 149 | 鄭汝益 | 1772.08~1773.11 | 南陽 | 京罷 |
| 150 | 李商建 | 1773.11~1774.05 | 洪州 | 辭遞 |
| 151 | 閔昌烈 | 1774.07~1775.01 | 驪州 | 貶罷 |
| 152 | 李禹鉉 | 1775.01~1776.06 | 溫陽 | 奔喪 |
| 153 | 洪秉聖 | 1776.07~1777.01 | 京 | 貶罷 |
| 154 | 沈鍊 | 1777.02~1777.06 | 京 | 貶罷 |
| 155 | 任希雨 | 1777.08~1778.10 | 京 | 仁同府使 移拜 |
| 156 | 辛錫範 | 1778.12~1779.06 | 京 | 貶罷 |
| 157 | 柳光命 | 1779.08~1781.06 | 京 | 奔喪 |
| 158 | 兪岳柱 | 1781.08~1782.12 | 京 | 持平 移拜 |
| 159 | 李羽晋 | 1783.01~1784.12 | 京 | 持平 移拜 |
| 160 | 李普天 | 1785.01~1787.04 | 京 | 瓜去 |
| 161 | 金基正 | 1785.05~1788.01 | 清州 | 罷去 |
| 162 | 金載翼 | 1788.02~1788.11 | 京 | 京罷 |
| 163 | 元永龜 | 1790.07~1793.05 | 京 | 瓜去 |
| 164 | 鄭宅昌 | 1793.05~1795.06 | 京 | 啓罷 |
| 165 | 南履翼 | 1795.06~1798.06 | 京 | 瓜去 |
| 166 | 韓興裕 | 1798.06~1800.04 | 京 | 校理去 |
| 167 | 閔百勳 | 1800.??~1801.?? | 清州 | 慈仁縣監 |
| 168 | 閔宗嫻 | 1802.08~1803.12 | 京 | 罷去 |
| 169 | 李重蓮 | 1803.12~1804.12 | 京 | 瓜去 |
| 170 | 李運恒 | 1804.12~1806.12 | 京 | 正言去 |
| 171 | 南惠寬 | 1806.12~1808.06 | 京 | 執義去 |
| 172 | 李悌彬 | 1808.06~1811.01 | 牙山 | 瓜去 |
| 173 | 朴長興 | 1811.01~1813.06 | 京 | 啓罷 |
| 174 | 元永俊 | 1813.08~1815.04 | 京 | 卒于官 |
| 175 | 具康 | 1815.04~1817.08 | 京 | 司諫去 |
| 176 | 金鍾謙 | 1817.08~1818.06 | 清州 | 貶罷 |
| 177 | 韓用錡 | 1818.06~1819.11 | 京 | 辭去 |
| 178 | 姜必魯 | 1819.11~1822.03 | 安東 | 持平去 |
| 179 | 徐淇修 | 1822.03~1823.12 | 京 | 持平去 |
| 180 | 權灝 | 1823.12~1825.08 | 魯城 | 貶罷 |
| 181 | 韓義植 | 1825.08~1828.01 | 京 | 瓜去 |
| 182 | 李定鉉 | 1828.01~1828.04 | 京 | 奔喪去 |
| 183 | 李圭殷 | 1828.05~1829.12 | 京 | 左兵虞候去 |
| 184 | 李顯稷 | 1830.02~1831.08 | 春川 | 罷去 |
| 185 | 白東奎 | 1831.10~1834.02 | 坡州 | 瓜去 |
| 186 | 金洛駿 | 1834.02~1835.06 | 洪川 | 京罷 |
| 187 | 梁建洙 | 1835.06~1837.11 | 水原 | 啓罷 |

| | | | | |
|-----|-----|-----------------|----|----------|
| 188 | 申大膺 | 1837.12~1838.03 | 順興 | 奔喪去 |
| 189 | 李熙廷 | 1838.04~1840.10 | 京 | 瓜去 |
| 190 | 李種華 | 1840.10~1843.01 | 京 | 瓜去 |
| 191 | 申奭浩 | 1843.02~1844.06 | 京 | 統制使 啓罷 |
| 192 | 李謙周 | 1844.04~1845.04 | 京 | 啓罷 |
| 193 | 南宮鈺 | 1845.06~1847.10 | 京 | 瓜去 |
| 194 | 趙文顯 | 1847.10~1850.01 | ? | 瓜去 |
| 195 | 韓容德 | 1850.02~1851.08 | 楊州 | 持平去 |
| 196 | 南履輪 | 1851.08~1852.06 | 京 | 移 僑繡事 罷去 |
| 197 | 李敏樹 | 1852.08~1853.11 | 京 | 奔喪去 |
| 198 | 朴光鎭 | 1853.12~1854.10 | 益山 | 御史 啓罷 |
| 199 | 金琦鉉 | 1854.10~1856.05 | 永同 | 移 正言去 |
| 200 | 金芋根 | 1856.06~1859.?? | 京 | 因道啓 加一年去 |
| 201 | 趙大榮 | 1859.??~1860.?? | 保寧 | 移 拜 弘陵 |
| 202 | 崔鍾德 | 1860.06~1861.09 | 京 | 泰安郡守 移去 |
| 203 | 南履定 | 1861.09~1863.02 | ? | 奔喪去 |
| 204 | 金昌秀 | 1863.02~1865.07 | 京 | 瓜去 |
| 205 | 尹錫五 | 1865.07~1867.07 | 京 | 除 釜山僉使 |
| 206 | 趙翼顯 | 1867.08~?????? | 京 | 移 尙州營將 |
| 207 | 沈宜稷 | 1868.12~1869.?? | 京 | 巡使 啓罷 |
| 208 | 柳箕東 | 1869.??~1872.12 | 京 | 移 高山里僉使 |
| 209 | 金泰恒 | 1873.01~1873.05 | 京 | 卒于官 |
| 210 | 姜奎馨 | 1873.06~1874.09 | ? | 病去 |
| 211 | 閔致夔 | 1874.10~1875.03 | ? | 卒于去 |
| 212 | 申相珪 | 1875.04~1877.06 | 仁同 | 瓜去 |
| 213 | 吳仲善 | 1877.08~1879.07 | 京 | 瓜滿移 咸鏡中軍 |
| 214 | 李秉翼 | 1879.07~1881.11 | 京 | 治民訴去 |
| 215 | 趙存植 | 1881.12~1882.03 | 京 | 卒于官 |
| 216 | 鄭海植 | 1883.08~1884.?? | 京 | 稅米事因湖伯狀罷 |
| 217 | 金在殷 | 1884.11~1885.06 | 京 | 內移 |
| 218 | 尹泳翰 | 1885.08~1885.09 | 京 | 价川郡守 移去 |
| 219 | 申從均 | 1885.12~1886.12 | 京 | 訓鍊僉使 內移 |
| 220 | 李明憲 | 1882.02~1888.06 | 京 | 移 慶州營將 |
| 221 | 申復均 | 1888.08~1888.12 | 京 | 移 咸從府使 |
| 222 | 趙鍾稷 | 1889.01~1890.01 | 京 | 移 郭山郡守 |
| 223 | 吳普泳 | 1890.01~1890.10 | 京 | 移 中和府使 |
| 224 | 蔡奎駿 | 1890.10~1891.09 | 京 | 奔喪去 |
| 225 | 李命憲 | 1892.03~1893.01 | 京 | 移 甲山府使 |
| 226 | 吳宏默 | 1893.02~1894.07 | 京 | 致民擾 去 |
| 227 | 申慶均 | 1894.08~1895.05 | 京 | 辭去 |
| 228 | 尹泳翰 | 1895.08~1895.09 | 京 | 移 蔚山郡守 |

| | | | | |
|-----|-----|-----------------|----|--------|
| 229 | 鄭濟斌 | 1895.10~1896.02 | 雲峯 | 辭去 |
| 230 | 吳哲善 | 1896.03~1896.09 | 公州 | 移 慶山郡守 |
| 231 | 李黃鍾 | 1896.09~1898.07 | 禮山 | 瓜去 |
| 232 | 尹龜榮 | 1898.07~1899.12 | 京 | 移 洪州 |
| 233 | 吳弘默 | 1900.02~1900.12 | 京 | (再任) |
| 234 | 曹有承 | 1900.12~1901.12 | 牙山 | 移 朔寧 |
| 235 | 李海成 | 1902.01~1902.02 | 扶餘 | 移 豐基 |
| 236 | 張吉相 | 1902.02~1902.04 | 仁同 | 移 清河 |
| 237 | 李完洙 | 1902.04~1903.07 | 本縣 | 移 穩城 |
| 238 | 李康準 | 1903.07~1905.09 | 知禮 | 移 禮安 |
| 239 | 李普鉉 | 1905.09~1906.06 | 京 | 內移 |
| 240 | 蔡範錫 | 1906.08~1906.08 | 庇仁 | 致民擾 去 |
| 241 | 俞擎淳 | 1907 | | |
| 242 | 尹命殷 | 1908 | | |
| 243 | 洪承均 | 1909 | | |

제 5절 고성지역 재지사족의 형성과 촌락공동체 조직의 변화

1) 조선중기 이후 고성 지역의 재지사족 형성

고려말 조선초기 고성 지역의 토성세력은 이·채(蔡)·박·김·남씨였다. 고성이씨 가문은 고려 후기에 신진사족으로 성장한 집안인데, 창녕 조씨, 진주 강씨 등과 같이 15세기 이전부터 이미 재경사족(在京士族)으로 성장하였다가 15세기 이후 다시 영남지방으로 낙향한 토성사족이다. 고성남씨 가문의 인물로는 세종조에 직제학을 지낸 남수문(南秀文)과 성종 때 급제한 남세빙(南世聘)과 세주(世周) 형제 등이 있는데, 이후의 세계와 후손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다. 고성의 대표적 내성(來姓)은 전주최씨 집안이다. 전주 최씨는 임진왜란 이후 의병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공을 세운 것을 바탕으로 고성을 주도하는 사족으로 성장하였다.

고성의 사족은 경거사족(京居士族)들이 낙향하여서 점차 재지사족의 세력이 형성되었고, 임진왜란 등 전쟁을 겪으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련의 사회로 계속된 정치적 사건과 직접 혹은 간접으로 연관되거나, 김종직과의 학문적 사승관계 또는 고성과 인근 지역 사족들과의 혼인 등을 매개로 낙향하여 자리잡는 경우가 많았다.⁹⁾

임진왜란 때 최전방이었던 고성지역에서 전개된 전투는 전쟁의 흐름에서 매우 큰 영향을

9) 장동표, 「조선중기 고성지역 재지사족의 형성과 발전」, 『지역과 역사』 6호, 2000, 5~33쪽을 주로 참조하였다.

미쳤다.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사족으로 성장해 오던 가문을 중심으로 의병활동이 전개되었다. 고성지역 사족의 의병활동 참여는 이들이 향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크게 작용하였다. 고성지역 사족들이 주도한 대표적인 전투는 구만(九萬) 전투와 장치령(牆峙嶺) 방어 전투, 배둔 전투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전투에서 최균(崔均)·최강(崔綱)·박연홍(朴連弘)·정준(丁俊)·최용호(崔勇虎)·최각호(崔角虎)·최진호(崔振虎)·안신갑(安信甲)·정확(鄭廓)·나응벽(羅應壁)·나언린(羅彦麟)·나치문(羅致紋)·이달(李達) 등이 창의와 전투를 주도하며 참여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전후 복구과정에서 고성에서 활발한 의병활동을 주도하거나 참여하였던 사족은 지역의 사회경제를 주도하는 가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고성지역은 임진왜란기에 격전지였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던 곳이다. 따라서 전쟁 피해의 복구 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 또는 가문이 향촌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고성에서 전쟁을 수행한 주체는 국가와 양반지배층이었고, 일부 사족들이 의병운동을 통해 많은 공훈을 세웠다. 임진왜란 이전부터 고성에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일부 가문은 전쟁 복구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고성 향촌사회의 주도세력으로 성장해 갔다. 구만 전투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나씨 가문을 대신하여 최강과 최균 형제의 전주최씨 가문이 의병운동의 공로 등에 힘입어 고성 지역의 향론을 주도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향촌지배기구의 하나였던 서원의 건립이 점차 증가하였다. 고성에는 임란 이전의 서원으로 이암(李岳)을 배향하기 위한 금봉서원(金鳳書院)이 있었으며, 1633년(인조 11) 의민공(義敏公) 최균과 의숙공(義肅公) 최강을 배향하기 위해 건립된 도산(道山)서원, 1709년(숙종 35)에 건립된 유촌서원에는 심광세와 의병활동에 참여하고 병조판서에 추증된 이달이 배향되어 있다. 1738년(영조 14)에 건립된 곤의(昆義)서원에는 부사 이운길(李云吉), 현령 어연(魚淵), 직제학 어변갑(魚變甲), 문효공 어효첨(魚孝瞻), 집의 이의형(李義亨) 등이 배향되어 있다. 마암면에 있는 위계(葦溪)서원은 1844년(헌종 10)에 건립되었는데 주로 함안이씨 인물들이 배향되어 있는 전형적인 문중서원이다. 조선후기 고성 지역에 건립된 서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후기 고성지역의 서원과 사우>

| 명칭 | 소재지 | 창건연대 | 배향인물 | 유래 및 연혁 | 향사일 | 비고 |
|------|---------|-----------------|--------------------|----------------------------------|----------------|-------------------|
| 葛川書院 | 대가면 갈천리 | 1712년 (숙종38) | 李岳, 李嶠, 盧筆, 魚得江 | 1869년(고종6) 훼손, 1880년(고종17) 복원 | 음력 3월 申日 | 도문화재자료 제36호 지정 |

| | | | | | | |
|-----------|---------|--------------|--|---|------------|-----------------|
| 景山書院 | 거류면 송산리 | 1946년 | 具應辰, 具應參, 具應星, 具棟 | 4公의 유덕을 추모하기 위해 鄉議로 건립, 향사 | 음력 3월 中亥일 | |
| 景賢書院 | 거류면 당동리 | 1864년 (고종1) | 崔致遠, 崔洵, 崔震立, 崔王命, 崔濟楫, 崔世燦, 崔奎翼, 崔祥弼, 崔鉉權, 崔絃甲, 崔鉉亢 | 당초 精舍로 창건, 1868년(고종5)에 훼손. 1953년 증건하고 서원으로 개칭 | 음력 10월 上庚일 | |
| 昆義書院 | 마암면 삼악리 | 1738년 (영조14) | 李允吉, 魚淵, 魚變甲, 魚孝瞻, 李義亨 | 대원군 철퇴령에 의해 훼손 | 不享 | |
| 菊山書院 | 동해면 외곡리 | 1841년 (헌종7) | 李源, 李瑒 | 당초 菊逸祠로 창건. 1944년 재건. 1980년 菊山書院으로 승격, 개칭 | 음력 9월 25일 | |
| 金鳳書院 | 회화면 봉동리 | 미상 | 李岳 | 1712년(숙종38)에 훼손. 같은 해에 葛川書院을 건립하고 移安 | 불향 | |
| 德山書院 | 마암면 두호리 | 李好誠, 李僖, 李侃 | | 당초 함안군 가야면 검암리에 東山書院으로 창건. 1868년(고종5) 훼손. 1970년 현위치로 이전 재건하고 개칭 | 음력 3월 河丁일 | |
| 道山書院 | 구만면 화림리 | 1781년 (정조5) | 崔均, 崔峒 | 1868년(고종5) 훼손. 1946년 복원. 당초 李達도 봉향하였다가 1842년에 유촌성원으로 移安 | 음력 3월 中丁일 | 도문화재자료 제35호 지정 |
| 道淵書院 | 마암면 도전리 | 1686년 (숙종12) | 許有全, 許榮, 許麒, 許惟新, 許千壽, 許栽 | 1868년 훼손. 1920년 복원. 1950년 소장서적 燒失 | 음력 10월 3일 | 도문화재자료 제37호 지정 |
| 鳳山書院(三忠祠) | 회화면 삼덕리 | 1966년 | 鄭廓, 鄭奎, 鄭潤 | 1876년 서당건립. 1970년 사우 건립, 서당 증건 | 음력 3월 19일 | 지방유형문화재 제95호 지정 |
| 繡林書院 | 마암면 화산리 | 1841년 (헌종7) | 裴玄慶, 裴廷芝, 裴仁敬, 裴孟寬, 裴尙哀, 裴褻 | 1868년(고종5) 훼손. 1923년 복원 | 음력 10월 11일 | 도문화재자료 제34호 지정 |
| 新道書院 | 고성읍 수남리 | 1854년 (철종) | 趙凝道, 朴愛祥 | 1869년 훼손 | 불향 | |
| 雲谷 | 대가면 | 1856년 | 魚得江, 諸哲孫, 諸 | 1868년 훼손. 1987년 | 음력 | 지방유형문화 |

| | | | | | | |
|------|---------|--------------|---|--|------------|--------------------------|
| 書院 | 척정리 | (철종7) | 沫, 諸弘祿 | 향의로 재건 | 9월 27일 | 재 제29호 지정 |
| 葦溪書院 | 마암면 석마리 | 1844년 (헌종10) | 李仁亨, 李義亨, 李禮亨, 李智亨, 李翎, 李詡, 李顯, 李應星, 李達, 李濟 | 1868년 훼손. 1964년 복원 | 음력 9월 中丁 일 | 도문화재자료 제38호 지정 |
| 柳村書院 | 고성읍 덕산리 | 1709년 (숙종35) | 沈光世, 李達 | 1868년(고종5) | 불향 | |
| 佳山祠 | 거류면 가려리 | 1822년 (순조22) | 白鳳來 | 1852년(철종3) 중건. 1868년(고종5) 훼손. 1967년 복원 | 음력 10월 15일 | |
| 肅淸祠 | 대가면 척정리 | 1698년 (숙종24) | 諸葛亮 | 1868년(고종5) 훼손. 1916년 鄉議로 재건 | 음력 9월 9일 | 지방유형문화재 제18호 지정 |
| 虎岳祠 | 동해면 장좌리 | 1827년 (순조27) | 千萬里 | 1869년(고종6) 훼손. 1888년(고종25) 중건 | 음력 8월 1일 | 1827년 사액. 도문화재자료 제39호 지정 |

한편 조선후기 고성 지역에서 기반을 잡은 창원 구씨(具氏)도 향촌의 내에서 일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창원 구씨는 원래 ‘구씨(仇氏)’였으나 정조가 구씨(具氏)를 사성(賜姓)하면서 이후의 기록에는 구씨(具氏)로 되어 있다. 창원에서 세거하던 구씨가 고성현 광일면 도산리로 이주한 시기는 선조대였다. 고성에 정착한 구씨 가문은 임진왜란 때 창의(倡義)한 구응진(仇應辰)·구응삼(仇應三) 형제와 종제인 구응성(仇應星), 응성의 아들 동(棟) 등의 인물을 배출하였고, 이러한 공훈을 인정받아 그 이후 3대에 걸쳐 증직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일족은 조선중기 이후 仕宦에서 멀어지면서 18세기 중엽에는 거의 잔반층(殘班層)으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가문을 사회적 위상이나 경제적으로 한 단계 끌어 올린 인물이 구상덕(具尙德)이다.

구상덕(1706~1761)의 생애를 통해 사회 신분으로나 경제적으로 재지사족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가문이 지역사회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그는 『승충명록(勝聰明錄)』이란 일기를 남겼다. 일기에는 사족으로서 위상과 활동을 보여주는 많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 서재를 열어 교육활동과 후학을 양성하고 있던 모습을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¹⁰⁾ 구상덕은 평생 동안 공부를 하며 자신을 수련하는 동시에 친족이나 이웃 주민의 자제 교육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구상덕은 30대 초반까지는 여러 산사(山寺)에 거접(居接)하면서 자신의 과거

10) 이에 대해서는 진경목, 「서재 경영과 교육 활동」, 『승충명록으로 보는 조선후기 향촌 지식인의 생활사』,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131~171을 주로 참조하였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친척이나 이웃의 어린 자제들을 문생으로 받아들여 『천자문』·『통감』·『사략』·『춘추전』 등을 가르쳤다. 32세부터는 용암서재(龍巖書齋)를 건립하고 훈장을 영입하여 문생들을 본격적으로 교육하였다. 용암서재에는 20여명의 문생이 있었으며, 이들은 구상덕으로부터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 시기에 가르침을 받던 문생은 친척보다는 교생이나 일반 평민의 자제들이 더 많았다. 용암서재에서 문생이 배운 내용은 『소학』을 중심으로 사서삼경과 『통감』 등이었다. 구상덕의 교육을 받은 문생들은 고강(考講)에 합격하여 충군(充軍)되는 것을 피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1745년 말 경 용암서재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화재로 소실되었다. 이후 중수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는 후 1754년 서재가 복원되었다. 서재는 구상덕의 아호를 따서 월봉서재(月峰書齋)로 불렸다. 월봉서재가 운영되는 7년여 기간에 70여명의 문생이 수학하였다. 문생들의 나이는 10여세 전후부터 나이가 많은 중년까지 다양하였으며, 신분으로는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양반의 자제뿐만 아니라 중인이나 수군 등 평민의 자제들도 수학하였다.

2) 조선후기 촌락공동체 조직의 변화

조선왕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 난 후 이전에 없는 큰 변동을 겪게 되었다. 전란으로 인한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 농토의 폐허화 등을 서로간에 도움을 주거나 받아야 하는 필요성에 양반과 상천(常賤) 모두가 협력하여야 하는 절실함에 공감하게 되었다. 또한 전란 중에 보여준 하층민의 의병활동 등도 난 후에 양반과 상민이 함께 동참하는 상하합계의 동계가 결성되는 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그런데 두 차례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다음에는 사족층이 상민들에게 강조하는 첫째 덕목으로 ‘수분(守分)’을 강조하는 등 동계는 사족의 동민 지배 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어 갔다. 사족들은 왜란과 호란 이전에 확보하였던 향촌사회에서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였다. 먼저 현실을 인정하여 하민(下民)들과 협력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이와 반대로 사족들의 이념적 무기였던 성리학의 윤리강령을 앞세운 명분론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변동과 함께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한 신흥세력인 부농층 서얼들이 면리의 실무를 맡게 되자 향촌사회에서 신분간의 갈등과 대립이 확대되는 측면도 있었다.

조선후기 향촌사회에서 실시되었던 동계(洞契)나 동약(洞約)은 대부분 지배계층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사족중심의 동약 조직들은 하나의 촌락 혹은 자연·혈연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여러 개의 자연촌락에 거주한 유력 성씨나 사족집단의 결사체적 성향이 강하였다. 사족들은 자신들의 결사체 조직들을 통해 하층민을 통제하려 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

령관·관권과 유대를 긴밀하게 하거나 타협하고자 하였다.

고성지역에서도 향약이 실시되었는데 그 실체를 보여주는 자료는 많지 않다. 현재 알려진 자료로는 18세기 중엽 광일면에 속해 있던 은정리(銀亭里)에서 실시된 동약을 통해 당시 향촌사회 규약과 공동체 생활의 일면을 알 수 있다. 은정리 동약은 건륭 13년(영조24, 1748)에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은정리는 지금의 거류면에 속해 있는 지역이다. 「은정리동안(銀亭里洞案)」에는 42명의 성명과 절목은 다음과 같다.

銀亭里洞案

乾隆 13年(1748) 戊辰 4月 銀亭里鄉約洞案

안서구(安瑞壽) · 김석방(金碩芳) : 甲子軍功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故書于? · 구후청(仇厚淸) · 정확(丁廓) · 이세춘(李世椿) · 정창래(丁昌來) · 배석장(裴碩章) · 박유장(朴有章) · 김하추(金夏秋) · 김하석(金夏石) · 정재장(丁載章) · 이진태(李震泰) · 이진성(李震成) · 이천석(李天錫) · 이하준(李夏俊) · 최우영(崔祐英) · 강세평(姜世平) · 최성원(崔成元) 除 박계장(朴繼章) · 박만석(朴萬石) · 조례발(趙禮發) · 정두문(鄭斗文) · 최유진(崔有進) · 정두만(鄭斗萬) · 이충신(李叢新) · 서일만(徐日萬) · 최몽치(崔夢致) · 김종구(金重九) · 황순장(黃順章) · 최세장(崔世章) · 김일재(金(苻+叱)才)

仰贊

김상연(金尙演) : 有折衝帖 故書于首 · 구상신(仇尙愼) · 정하중(丁夏中) · 정창윤(丁昌潤) · 정창구(丁昌龜) · 정창백(丁昌百) · 구봉조(仇鳳朝) · 김세홍(金世弘) · 이봉삼(李鳳三) · 이평재(李平材) · 박원재(朴元才) 除

좌상(座上) 김상연(金尙演)

공무원(公事員) 이진태(李震泰)

<節目>

1. 人家失火改造時 出闕則 租四斗式 徵捧事
1. 初喪殯所造成時 干租二斗式徵捧事
1. 初喪草殯數三里中 各附近 一里式 造給爲乎矣 出干則 租一斗式徵捧事
1. 葬時 造墓軍 一日莎土十丈式赴役爲乎矣 干則租三斗式徵捧事
1. 春秋講會時全干則 租七斗式徵捧爲旡 身參而酒干則 租五斗式徵捧爲遣 酒呈而身干則減給事
1. 約日公事時出干則 租三斗式徵捧事
1. 聚會時 上衣及行纏不着 則租一斗式徵捧事
1. 某山出火時 不爲趨赴滅火者 租二斗式徵捧事
1. 轉送負卜出干租二斗式徵捧事

1. 聚會時 酒妄作亂者 決笞三十度事
1. 凌侮洞內者 決笞三十度是乎矣 不爲順奉是去等 報官重治事
1. 灌溉時不爲均分 而欲自都執者 報官處置事
1. 等錄外 亦不無私情相顧之道是在果 或火速喪葬及婚姻之日 錢不顧見者損徒事
1. 此規定式之後 若有不從洞法者 穀物段屬公官家 ? 追決罪者段置 亦不順從是去等 論報重治事
1. 洞內羅家收二三次不納者 罰定禁松山直六朔事
1. 放牧長廣四尺 每穀一斗 自洞內徵捧事
官(手決)

절목은 모두 16조목으로 되어 있다. 내용을 정리하면 이웃이 화재를 당했을 때 도울 일, 초상을 당해 빈소를 조성할 때 도울 일, 장례 때 묘소를 만들 때 사토(沙土)에 대해 부역(赴役)할 일, 봄 가을 강회(講會) 때 참석할 일, 모임 때 갖추어야 할 옷차림에 대한 일,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진화에 참여해야 할 일, 조세 운반에 참여해야 할 일, 동네 사람을 능묘(陵侮)하는 자에 대해 처벌할 일, 농경지에 물을 공급할 때 고르게 나누지 않고 자기 고집만 부리는 자에 대해 처벌할 일, 상장과 혼사 등을 돌보지 않는 자를 손도(損徒)할 일, 동약을 따르지 않는 자의 곡물을 속공(屬公)하거나 관에 보고하여 다스릴 일, 곡식을 납부하지 않을 때 6개월간 금송(禁松)지역의 산지기로 정하는 일, 방목에 대해 납부할 곡식 등에 대해 정하고 있다.

18세기 후반 이래 각 지역에서 마련된 동약은 사족체제가 붕괴되면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동약을 실시한 목적은 부세의 과중으로 인한 농민들이 유리하는 것을 막아 동리의 안정을 꾀하고자 한 것이다. 동약은 규약을 권장하여 상호 구휼케 하여 동리의 안정과 풍속을 바르게 하고자 하였다. 동약의 실시는 신분분화가 급속하게 진전되어 신분제가 혼란케 되었을 때 지배계층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현실 대응방법 중 하나였으며, 이를 통하여 향촌질서를 재편성하고자 한 것이다.

제 6절 고성 지역의 장시 개설과 상품유통

조선시대 장시는 15세기 중엽 전라도 지방에서 처음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정기적으로 개설되는 시장인 장시는 분명 기준에 없던 형태로 농민들의 경제생활을 크게 변화시켰다. 장시는 초기에 보름 또는 10일에 한 번씩 열리는 형태였다. 장시 개설에 대해서는 물가를 상승시키며, 도적이 성행하며, 전야(田野)가 황폐화된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억제하지는

주장과 일부 폐단이 있기는 하지만 농민들이 상호 교역하므로 생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가뭄이나 흉년에 진휼(賑恤)과 구황(救荒)에 도움이 된다며 허용하자는 서로 엇갈리는 의견이 분분하였다.

장시개설을 계기로 농민들은 잉여생산물의 처리나 필요한 물품을 마련하는 것이 용이하게 되었다. 16세기 전반기에 이르러 장시 개설은 정부의 억압정책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다. 17세기에 이르면 한 달 30일 동안 장이 서지 않는 날이 없다고 할 정도로 각 군현마다 1~3개 정도의 장시가 개설되고 있었다.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이 시기에 이르면 고성지역에도 1개 이상의 장시가 개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성지역에 장시가 개설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기록은 『동국문헌비고』를 통해 알 수 있다. 1872년에 제작된 지방지도에도 읍내장, 배둔장, 당동장 등 3개의 장시가 개설되고 있는 것으로 표기하고 있다.¹¹⁾ 고성 지역에 개설되고 있던 장시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후기 고성지역 장시 개설 현황>

| 장시명 | 소재지 | 개시일 | 동국문헌비고(1770) | 임원경제지(1830) | 東興圖志(1834) | 고성부읍지(1895) |
|-----|----------|-----|--------------|-------------|------------|-------------|
| 邑內場 | 성내 | 1·6 | 0 | 0 | 0 | 0 |
| 背屯場 | 북30리 배둔면 | 4·9 | 0 | 0 | 0 | 0 |
| 春元場 | 남40리 轅門內 | 2·7 | 0 | 0 | 0 | |
| 唐洞場 | 20리 광이면 | 3 | 0 | 0 | 0 | 0 |
| 夫浦場 | 20리 상리면 | 3·8 | 0 | | 0 | 0 |
| 南村場 | 20리 | 8 | | | | 0 |

농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장시는 그 크기와는 상관없이 일단 거주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곳이었다. 고성지역 민인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개설되는 장시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30~40리 정도 거리를 두고 개설되는 인근 장시까지 이용하였다. 인접한 장시를 이용하는 자들은 장시를 순회하는 전업 상인만이 아니라 하루에 왕복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농민들은 자신이 생산한 각종 잉여생산물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로 장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각 지방의 장시는 농촌 경제의 중심무대가 되고 있었으며, 지역간 연계관계가 긴밀해지는데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었다.

11) 『1872년 조선후기 지방지도』, 고성부지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그리고 장시 개설의 정기성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주기가 장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크게 작용하였다. 5일마다 돌아오는 개시일은 일상생활에 여러 형태로 영향을 주었다. 전국적으로 1개월 6회 정기적으로 열리는 장시는 상인과 농민, 수공업자 등 시장을 이용하는 자들의 생활주기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거주 지역을 벗어나 상품교역에 참여하거나 여행하는 기회가 많아지는 등 농촌의 사회 경제활동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정기시장은 지역사회를 공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통합시키는 복합성을 갖고 있다. 공간적으로는 지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거리, 인구밀도 등이 작용하고 있다. 시간적으로는 장날을 지정함으로써 능률적으로 수요자와 공급자를 한 장소로 밀집시킨다. 아울러 장시는 농촌의 소상품생산자가 상품유통을 매개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그리고 장시가 포괄하는 주변 촌락은 생산권이자 소비권인 재생산권으로서 기능하고 있다.¹²⁾

17세기 이래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대동법과 금속화폐 유통의 확대, 조세의 금납화, 통공 발매의 실시 등은 농촌사회의 경제구조를 크게 변화시켰다. 농민들은 당연히 이러한 경제 구조에 적응하여야 했다.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업적 농업은 장시발달에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 농민들은 각종 작물의 재배방법과 출하시기, 거래할 지역 등을 고려할 때 장시를 빼놓을 수 없게 되었다. 농민들은 보다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 시장성을 고려하여 농업을 경영하였다.

<고성의 물산>

| 구분 | 항목 | 물산 종류 |
|--------------------|----|--|
| 세종실록지리지 (1454) | 土宜 | 벼·조·콩·보리 |
| | 土貢 | 꿀·밀[黃蠟]·표고버섯·송이버섯·작설다(雀舌茶)·모래무지·건합(乾蛤)·대구·문어·생포(生鮑)·도음어(都音魚)·미역·우무[牛毛]·세모(細毛)·어교(魚膠)·왕대[簞]·지초·종이·칠·사슴가죽·여우가죽·삼가죽·노루가죽·산달피(山獺皮) |
| | 藥材 | 맥문동(麥門冬)·방풍(防風) |
| | 土產 | 녹반(碌磻) |
|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 | 토산 | 녹반·대구어·전복·해삼·굴조개·청어·문어·전어·홍합·미역·대나무·송이·석류·유자·왜닥나무·표고·감<신증> 황어·조기·숭어·농어·오징어·낙지·곤쟁이·맥문동·녹용·차 |

12) 정승모, 「농촌 정기시장체계와 농민 지역사회 구조」, 『호남문화』 13, 1983, 참조

| | | |
|-----------------|----|---|
| 여지도서 (1765) | 토산 | 녹반·대구어·전복·해삼·굴·청어·문어·전어·홍합·미역·대나무·송이·석류·유자·왜닥나무·표고·감·황어·조기·송어·농어·오징어·낙지·곤쟁이·맥문동·녹용·차 |
| | 進貢 | 인삼·작설·백작약·오매·복신·맥문동·연시·김·전어·건해삼·전복·생전복·문어·유자·청어·표고버섯·생록(生鹿)·말린청어·가사리·미역귀 |
| 임원경제지 (1830) | | 녹반·감·유자·석류·송이·표고·차·대나무·맥문동·왜닥나무·소금·송어·농어·대구어·조기·황어·청어·전어·오징어·문어·낙지·전복·곤쟁이·홍합·해삼·석화·미역·녹용·죽립침(竹笠簷)·도검(刀劍)·부채 |
| 고성읍지 (1832) | 토산 | 대구어·생복·해삼·홍합·석화·청어·조기·문어·전어·송어·오징어·미역·김·유자·감·맥문동 |
| 대동지지 (1863) | 토산 | 대나무·왜닥나무·차·석류·유자·감·비자·표고버섯·송이버섯·녹용·지황·패랭이·부채·미역·김·전복·해삼·홍합·대구 등 어물 15종류 |
| 고성부읍지 (1895) | 토산 | 대구어·생복·해삼·홍합·석화·청어·조기·문어·전어·송어·오징어·낙지·미역·가사리·송이버섯·석류·감·맥문동·작설 |

농민들이 자가생산과 소비에 그치지 않고 상품성을 고려하여 재배하고 있던 것들은 매우 다양하였다. 우선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곡물류와 직물류, 채소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외에 약재, 연초, 석류(席類) 등도 농기수입에 큰 몫을 차지하였다. 수공업분야에서도 농촌에서는 가내수공업으로 면포·마포·서포 등을 생산하여 상품화하면서 농가수입을 증대시켰다. 17세기 후반 이래 장시가 개설되는 수가 증가하고 있음은 농촌사회에서 그 필요성이 증대하는 것과 직결되는 것이다. 장시의 필요성 증대는 이 시기 농촌경제 대부분이 유통시장과의 연계성이 긴밀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장시의 발달과 함께 지역별로 시장권이 형성되면서 지역간 교류도 활성화되었다. 인접 고을간의 교류가 많아지는 가운데 장길과 같은 지름길들이 새로 만들어졌다. 대량의 상품을 보다 빠르게 운송하는 것은 곧바로 상업적 이득과 직결되는 것이었다.

한편 지역간 교류가 많아지면서 교통의 요지에 주막이나 店幕이 들어섰다. 장시와 장시를 연결하는 도로 곳곳에 들어선 주막과 점막은 지역주민들의 사회 경제활동 범위를 확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상인들의 왕성한 활동이 새로운 교통로를 만들어 갔으며, 민물(民物)의 활발한 교류를 계기로 여점(旅店)이나 주막들이 신설되었다. 이들 시설은 여행자

들의 숙박과 이들에게 주식(酒食)을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차츰 상품유통의 장소로 또는 운음(綸音)이나 정령(政令) 등을 게시하는 홍보의 장으로 기능하기도 하였다.

장시는 위유사(慰諭使)나 암행어사들이 민정의 동태를 살피고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중요한 공간이었다. 그리고 사회에 불평불만을 품은 자가 그 내용을 알리거나 개인적인 억울함을 호소하는 장소로 장시가 이용되었다. 조선시대 ‘대자보(大字報)’와 같은 성격의 패서(掛書)나 벽서(壁書)가 나붙는 곳이 장터였다. 장시는 익명성을 지닌 곳으로 민인들이 자연스럽게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이고,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시일이 개시일이었기에 정부와 민인들 모두 이와같은 장시의 기능을 적극 활용하였다.

18세기 이래 나타난 변화 중 하나는 각 지방에서 장세(場稅)를 징수하여 지방재정에 보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기 조정에서 논의되는 장시문제도 대개는 장세징수를 둘러싸고 일어났다. 장세를 징수한다는 것은 장시개설을 공식화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장세는 각 지방의 재정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되고 있었다. 장세의 용도는 진휼 자금에 사용되거나 민인들의 요역을 대신하는 경비로 사용되었으며, 일부 수령들이 사사로이 사용하는 것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장세는 도별로 징수 규모에 있어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경상도는 71개 군현 가운데 58개 군현에서 장시세를 징수하고 있었다. 『부역실총』에 의하면 고성에서는 ‘본관봉용질(本官奉用秩)’로 108냥의 장세전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시에 대한 지방 수령들의 인식도 크게 변화하였다. 장시를 개설하는 것이 민인들의 생활에 크게 관련된다고 보아 각종 폐단을 규찰하고 단속하여 원근에서 물려와 교역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량형 변조나 거래물품의 가격을 조종하는 도고(都庫), 감고배(監考輩)들을 단속하여 민인들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고성부사 오홍묵은 장날에 수교(首校)를 보내 시장에서 발생하는 폐단을 일체 금단시키고 있다. 그리고 시장에서 물화교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각면에 두루 알리고 있다.

시장에서 거래하는 즈음에 억세고 사나운 자는 돈이 없어도 사들이고 잔약한 자는 돈이 있어도 사들이기 어려워서 이 때문에 시장에 곡식이 나오지 않아 값이 뛰어오르니 만약 이러한 폐습이 있으면 평시감관(平市監官)이 즉시 보고해서 바로 잡음이 옳다. 만약 사사로움에 구애되어 덮어두었다가 다른 길로 알려지면 그 감관은 엄중한 형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니 이리함을 알고 각성해야 할 것.¹³⁾

13) 『慶尙道固城府叢錄』 1893년 3월 1일.

이와 같은 조치는 반복하여 강조하였다. 오형목은 배둔장을 지날 때도 수배(隨陪)로 하여금 시장에 폐단이 있는지를 탐문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¹⁴⁾ 읍내장날에도 각 전방을 둘러 보며 폐단이 없게 하라고 신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¹⁵⁾ 그리고 연말에는 시장에 나가 두루 살펴보고 굶주린 자나 걸인들에게 동전을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¹⁶⁾

각 지방에 개설된 장시는 여성들이 상품생산과 판매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여성들의 경우 평소에 바깥출입이 여의치 않았지만 장날만큼은 자연스럽게 장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속담에 ‘여자는 제 고을 장날을 몰라야 팔자가 좋다.’ 는 말이 있다. 이것은 세상일을 모르고 집안에서 살림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속담은 장날을 통한 여성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업계의 변화와 각 지방의 장시 발달은 여성들도 경제현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고성부총쇄록』에도 여성이 시장에서 곡물 거래에 참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고을 시장에 이른바 여자 쌀장사 속칭 박도우(朴都于)라고 하는 자가 매번 장날이면 이른 아침에 긴요한 길목에서 교역하며 시장값을 멋대로 돈구어 한 뒷박에 더 받는 돈이 수삼전(數三錢)에 이르렀다. 쌀장사가 이 때문에 점점 적어지고 시장 쌀값이 이 때문에 배나 오르니, 흉년에 사다 먹는 백성들이 더욱 안타깝게 되었다. 전에도 신칙(申飭)하고 금단했지만 잠깐 조심하다가 발 돌아와서 점점 고질적인 폐단이 되고 있었다. 이 날은 청해관으로부터 직접 문밖으로 나아가 옷을 고쳐 입고 먼저 싸전으로 가서 쌀값을 물어본 다음 신칙하기를 전번 장날 값으로 팔게 하라고 분분하였다. 또 각 전방에 가서 시세를 묻고 차례대로 돌아본 다음 또 싸전으로 온즉 처음 볼 때 쌀 바구니가 13개였던 것이 다만 4개만 남았을 뿐이다. 내가 질문하기를 “아까 처음 보았을 때 13그릇이 지금은 다만 네 그릇이니 하는 것을 보니 더욱 놀랍고 밋도다. 내가 시장을 돌아보는 시간이 잠깐 사이인데 돌아볼 때에도 마음이 싸전에만 있어서 한 뒷박도 사고파는 일을 보지 못했는데 쌀은 없어졌으니 인심을 헤아릴 수 없음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이에 따르는 관속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쌀은 반드시 그 옆의 집에 있을 것이다. 즉시 수색하여 찾아오게 하고 박도우도 아울러 잡아다가 대령하라.” 고 하였다. 관속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찾아내니 다만 두

14) 『경상도고성부총쇄록』 1893년 4월 4일.

15) 『경상도고성부총쇄록』 1893년 10월 16일.

16) 『경상도고성부총쇄록』 1893년 12월 21일

어 바구니만 찾아냈다. 엄명을 내려 객시문 바깥에 의자를 설치하여 삼반(三班)의 점고를 받고 이른바 싸전 3소임 이하 박도우 등을 한꺼번에 잡아들이게 하고, 우선 3소임을 엄한 곤장을 시행한 다음, 쌀 바구니를 전부 찾아내어 앞에 놓고 사고자 하는 자를 불러들여 뒷박 당 지난번 장날 시세보다 5푼만 더해서 매매하라고 분부하니, 이에 늙은이 젊은이가 모여들어 앞을 다투어 어깨를 비비고 팔을 내밀어 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났다. 많은 분량을 살 수 없게 하고 다만 한 뒷박씩 나누어 갔다. 따라서 싸전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신칙하여 이르되 “흉년의 곡식 값은 한 푼도 어렵다고 여러 차례 칙령을 내려 너희들에게 내렸는데 너희들은 한결같이 장난쳐 스스로 살쩍 궁리만 하고 고치지 않으니 그 죄상을 파고 보면 가볍게 마감하고 말 수는 없다. 다음 처리하는 것을 볼 것이다. 지금은 우선 참작해서 용서하노라.” 이로부터는 이른바 박도우라는 명색을 일체 없애고 싸전을 옮겨 삼문 앞에 설치한 다음 시세에 따라 낮추고 올리면서 굶주린 백성들이 사먹음에 편리하게 하였다.¹⁷⁾

장시를 매개로 한 문화교류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장시는 민중들의 사교장, 오락장, 유희장으로 이용되었다. 그리고 장시는 술사(術士)나 사당패 혹은 걸립패 등으로 불리는 자들이 연희(演戲)하는 곳이기도 했다. 대개 무뢰지배(無賴之輩)나 한잡지배(閑雜之輩)들로 치칭되는 자들과 상인, 농민들에 의해 판이 벌어지는 투전(鬪錢) 혹은 골패(骨牌) 등의 잡기는 주로 장사에서 이루어졌다. 19세기 말 고성지역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장날마다 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

이 날의 장날이다. 미전(米塵)을 삼문(三門) 밖으로 옮기라고 어제 단단히 명령하였다. ……시장을 두루 돌아 동문 안에 이르니 목화전(木花塵)으로부터 각각 다른 전방(塵房)마다 그 시세를 묻고 매매를 함에 있어 억지로 하지 말도록 권면하며 혹은 폐단을 금지하고, 이어서 금상전(錦商塵)에 이르니 더러는 투전과 골패를 하는데 모여서 하지 않는 전방이 없었다. 이는 본래 금지하는 것이고, 더욱이 금년은 흉년이라 매우 엄하게 다스리는 때이므로 관예(官隸)를 시켜 몰래 조용히 약속을 하여 같은 시간에 각 전방의 앞에 벌려서 고치는 한 가운데의 자리에 서서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철저하게 수색하게 하였다. ……투전과 골패는 모두 모아 불사르고 동한(童漢)을 엄중하게 곤장으로 타이르며 이르되 “잡기의 금법이 얼마나 엄격한 일인데 감히 저자에서 버젓이 도박을 하느냐? 더구나 발각해서 수색하는 즈음에 마땅히 두려워하고 겁내도 용서받지 못하는데, 감히 방자하게 무단히 수탈당

17) 『경상도고성부총쇄록』 1893년 9월 15일.

한 듯하게 여기니...금년 같은 해에 이것을 뿌리 뽑지 않으면 부랑한 자들의 몰래하는 폐단과 공금을 함부로 하는 근심이 모두 이러한 데로부터 나올 것이니 지금 이 시장터 내의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명령하는 내용을 듣고 각각 스스로 경계해서 후회함에 이르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18)

이러한 놀이는 많은 폐단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늘 단속대상이었다. 투전 골패 등은 일반 민인이나 농민들의 단순한 놀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량배나 노름꾼들이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이나 장터에 판을 벌여 돈과 재물을 탕진시키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각 지방의 장시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날짜를 달리하여 개시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삶을 영위하는 근거지이자 여행의 주무대였다. 한편 이들은 각 지역을 이동하며 그들이 지닌 재주나 풍물을 보여주고, 또 다른 풍물을 흡수하여 다른 지방에 전하는 문화전파의 역할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임원경제지』에는 수록된 고성지역과 인접한 군현에서 개설되고 있던 장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임원경제지』 에 수록된 고성과 인접 군현의 장시 개설 현황 >

| 군현명 | 장시명 | 소재지 | 개시일 | 비고 |
|-----|------|------------|------|----|
| 고성 | 읍내장 | 관문 외 | 1·6 | |
| | 배둔장 | 현북 30리 회현면 | 4·9 | |
| | 춘원장 | 현남 40리 轆門內 | 2·7 | |
| 진주 | 州內場 | 동 1리 대안면 | 2·7 | |
| | 班城場 | 동 40리 반성면 | 3·8 | |
| | 嚴亭場 | 남 30리 금동면 | 5·10 | |
| | 末文場 | 남 70리 말문면 | 4·9 | |
| | 馬洞場 | 서 20리 마동면 | 3·8 | |
| | 大也場 | 서 50리 대야천면 | 4·9 | |
| | 文巖場 | 서 60리 종화면 | 3·8 | |
| | 德山場 | 서 70리 시천면 | 4·9 | |
| 사천 | 北倉場 | 북 30리 설매곡면 | 4·9 | |
| | 邑內場 | 관문 외 | 5·10 | |
| | 八場浦場 | 40리 삼천리면 | 3·8 | |
| | 釜谷村場 | 남 20리 하남면 | 2·7 | |
| | 新基場 | 서 10리 상서면 | 1·6 | |

18) 『경상도고성부총쇄록』 1893년 9월 16일.

| | | | | |
|----|------|---------------|-----|--|
| 진해 | 邑內場 | 관문 외 | 4·9 | |
| | 常令里場 | 북 5리 북면 | 1·6 | |
| | 倉浦里場 | 서 15리 서면 | 2 | |
| | 內浦里場 | 동 5리 동면 | 7 | |
| 거제 | 府內場 | 관문 외 | 4·9 | |
| | 河淸場 | 남 40리 하청면 하청리 | 1·6 | |
| | 我州場 | 동 30리 이운면 아주리 | 2·7 | |

고성 읍내장의 개시일은 1·6일이며, 나머지 장시는 서로 다른 날 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주민이나 상인 모두에게 인접한 곳의 장날은 서로 달라야 편리하다. 그런데 지역주민은 인접한 장시 사이의 장날이 최대한 벌어져야 시장을 이용하기에 좋은 반면, 상인들은 그것이 짧을수록 개시일에 따라 순회하기에 편리하다.

고성의 장시는 인근 진주지역의 장시와 개시일을 서로 달리하며 연계되어 있었다. 고성 읍내장은 진주의 영현장·엄정장이나 사천장과 연결되어 있었고, 배둔장(4·9)은 진주의 반성장과 연계하여 지역 물산이 거래되었다. 고성은 조창이 해당 지역권의 조세 상납 창구로 성장하면서 지토선이나 상선이 집중되어 유통을 원활하게 하였으며, 연장과 연해의 포구도 발달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포구를 중심으로 한 시장권과 수운 중심의 시장권이 연결되어 점차 전국적인 시장권이 형성되었다.¹⁹⁾ 고성지역은 김해의 칠성포와 창원 마산포를 중심으로 하는 낙동강 수운과 경상도 남해안의 시장권 내에 위치하고 있었다.²⁰⁾

『임원경제지』에는 각 군현의 주요 장시에서 거래되는 물품을 수록하고 당시 상황을 살펴보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고성을 비롯하여 인접한 군현의 주요 장시에서 거래되고 있던 물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성과 인접 군현 주요 장시의 거래 물품>

| 군현명 | 장시명 | 거래물품 |
|-----|------|--|
| 고성 | 邑內場 | 쌀 면포 어염 竹物 우독 |
| 진주 | 州內場 | 쌀 콩 보리 지마 수소 면포 면화 저포 마포 명주 어염 종이 유기 철물 목물 토기 자기 연초 인석 연석 礪石 石硫黃 대추 밤 배 감 牛犢 |
| 사천 | 邑內場 | 쌀 콩 보리 면포 마포 어염 연초 우독 |
| | 八場浦場 | 생복 淡菜 海菜 해삼 |

19) 변광석, 「18, 9세기 경상도 남부지역의 상품유통구조」, 『지역과 역사』 5, 1999, 182쪽.

20) 고동환, 「조선 후기 교통발달과 전국적 시장권의 형성」, 『문화역사지리』 8, 1996, 10-11쪽.

| | | |
|----|------|--|
| 진해 | 內浦里場 | 쌀 콩 보리 면포 마포 대구어 八梢魚 은어 도미 농어 모래무지 청어 조기 해삼 굴 석류 柿子 꿀 |
| 거제 | 府內場 | 쌀 콩 보리 지마 수소 면포 저포 마포 도미 조기 대구어 청어 농어 북어 건복 해삼 淡菜 海菜 細蝦 소금 표고 葛粉 유자 배 꽃감 석류 牛糞 |

주요 거래 물품은 대개 농산물과 수공업품이며, 지역적 특성이 드러나는 해산물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조선후기 고성지역에서 거주하였던 구상덕의 일기 『승충명록』에는 시장을 통해 거래되고 있던 물품과 가격이 기록되어 있어 많은 참고가 된다. 일상의 생활상을 기록하고 있는 일기에서 다수의 시장 물가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당시 물가수준에 대한 인식은 누구나 알아야 할 전반적인 경제상황 인식의 척도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²¹⁾ 농업 경영을 하면서 얻은 각종 곡물을 비롯하여 상업의 중심지인 통영에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어물의 거래가 일반적이었다. 어물의 경우는 통영, 거제를 낀 영남 남해안 시장의 포구에서는 곡물과 어물의 교환체계가 이루어져 있었다. 같은 시장권에 속해 있었던 고성도 어물은 물가의 추리를 가능하는 중요한 척도였다. 그리고 책과 종이, 담배, 옷감, 소와 말, 돼지 등 가축과 약재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물품의 거래는 대개 화폐를 통해 이루어졌다. 과거길이나 여행에 필요한 화폐는 때때로 곡식을 판매하여 마련하였으며, 집을 구입할 때도 곡식을 화폐로 교환한 뒤 구매하였다. 화폐유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고성지역은 북으로 마산포와 진해현의 시장권에 인접해 있으며, 서쪽으로는 진주권의 포구유통 관문인 사천과 근접하고 있었다. 특히 경상우수영인 통영이 소재하고 있어 관방상 중요한 군사적 지역이었다. 그러므로 통영은 민간 수요 외에도 군병들의 식량·의복·남초(南草) 등 각종 물화의 수요가 많았으므로 통영장시에는 특별히 4개의 상설 시전이 설치되었다. 그 중에서 미전은 35곳이며 가가(假家)가 수백여 칸이나 되었고, 영남과 호남의 연해 상선들이 장기간 무곡(貨穀)활동을 하기 위해 정박하기도 하였다. 포목전은 23곳으로 영호남 상인들이 무려 200여 명에 이르렀고, 물화전은 17처로 50여 칸이나 되었는데 서울과 개성의 물화들이 장기간 거래되었다고 한다. 또한 남초전은 2곳으로 수백여 명의 영남 상인들이 활동한다고 하였다.²²⁾ 통영장은 시장의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상선이 고성, 거

21) 진성호, 「18세기 미가추이와 미가정책에 관한 연구」, 『사학연구』 52, 1996, 123쪽

22) 『統營志』 場市條(규장각 10876, 12186) 참조

제, 창원, 하동, 곤양, 김해 등 인근지역은 물론 원격지에서도 활발하게 모여들었다. 특히 개성상인과 동래상인이 와서 이곳에서 생산되는 해삼(海蔘)을 도거리하여 송상에 넘기거나 영문(營門)에 납부하는 도고(都庫)를 벌이기도 하였는데²³⁾ 도가(都家)가 8곳이나 있었다. 고성의 주요 생산물은 곡물이었는데 부산이나 통영에 선박으로 수송하였으며, 각 촌락에서 생산된 곡물은 모두 배둔동에서 선박에 적재하여 진해만으로 곧바로 출하되고 있었다.

한편 조세운반을 위한 조창 외에 민생을 위한 교제(交濟)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지역에 창고가 마련되어 곡물을 비축하고 있었다. 이것이 제민창으로 경상도 지역의 경우 대표적으로 사천에 있었다. 사천창(泗川倉)은 비축곡이 6만 석으로 호남 좌·우창(左右倉)과 호서의 각 창이 3만 석에 불과한 데 비해 그 규모가 두 배나 되었다. 또한 소속 읍은 사천의 9개 면을 비롯하여 진주 23개 면, 고성 3개 면, 곤양 6개 면이었다. 이러한 창고의 운영을 위해 별도로 사천과 고성에서는 조세전(漕稅錢)을 징수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인근 선박으로부터 매년 12냥의 선세를 징수하므로써 연해 여러 읍에 부담을 가중시켰다.²⁴⁾ 조창은 해당 지역권의 조세 상납 창구로 성장하면서 지토선(地土船)이나 상선의 왕래가 활발해지면서 유통을 원활하게 하였다. 18세기 후반 이래 수운을 통한 세곡과 상품의 수송을 위해 인근 연강과 연해의 포구가 상품교역의 중심지로 발전하였다.

조선후기 포구간 상품유통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고성지역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고성은 삼도수군통제영인 통영이 소재한 지역으로 군사적 중요도가 높은 지역이었으며, 해상에서의 수세 권한을 장악한 상품유통의 요충지이기도 하였다. 고성에는 적진포(積珍浦)·죽림포(竹林浦)·두룡포(豆龍浦)·삼천포(三千浦)·거을망포(巨乙望浦)·당포(唐浦)·굴항포(掘項浦)·우포(羽浦)·죽도포(竹島浦)·구소비포(舊所非浦)가 있었으며,²⁵⁾ 남촌포(南村浦)·가배포(加背浦)·안영포(安營浦)·수월포(愁月浦)·양지포(陽知浦)·원춘포(元春浦)·쌍봉포(雙峰浦)·수화포(水火浦)·어례향포(魚禮鄉浦)·지포(池浦)·마소포(馬所浦)·혜질이포(惠叱伊浦)·좌신곶(佐申串)·을상곶(乙上串)·주악곶(住嶽串)·해평곶(海平串)·소소포(召所浦)·가차포(加次浦)·당항포(唐項浦)·자화포(資火浦) 등이 있었다.²⁶⁾ 고성을 중심으로 하는 상품유통은 함경도 함흥지역에서 전라도 흥양까지 범위가 매우 넓었다. 동해안의 경상도, 강원도, 함경도의 어물과 고성의 곡물이 교환되었으며, 전라도 흥양과는 미곡과 소금이 거래되었다.²⁷⁾

23) 『統營志』場市 “海蔘都賈 海蔘卽巨固兩邑之所產 松商菜賈長時通貨換用 而營用之需 受本錢當納”

24) 김현구, 「18·19세기 경상도 남부지역의 상품유통구조」, 『지역과 역사』 5호 참조

25) 『嶺南沿海形便圖』고성.

26) 『중보문헌비고』 권35, 輿地考 關防 海防.

27) 고동환, 「조선후기 선상활동과 浦口間 상품유통의 양상」, 『한국문화』 14, 1993, 310-311쪽 참조.

고성과 인접한 곳의 창원은 마산창이 소재한 조창(漕倉)지역이었다. 그러므로 세곡운송에 따른 상품유통량이 많았다. 창원의 중심포구는 수 천척의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마산포인데, 이 포구는 경상도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해상유통의 중심포구였다. 마산포는 동해안의 경상도와 강원도와 연결하여 마포와 북어가 집하되어 서해안의 충청도의 은진 강경포로 연결하는 중계포구 역할도 하였다. 그리고 거제에는 선창포를 비롯하여 1백척 이상의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포구만 해도 9개나 될 정도로 해상교통이 발달한 곳이었다. 이와 같은 지리적인 이점을 지니고 있던 고성지역은 19세기 이후 내륙과 해안을 연결하는 상품교역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제 7절 고성 지역의 농민 항쟁과 동학농민운동

1) 1869년 고성 농민 항쟁

고종 6년(1869)에 발생한 고성현의 농민항쟁은 호적감색(戶籍監色)이 통제영이 있는 춘원면에 대해서만 유독 사천(私賤)을 유학(幼學)으로, 유학을 사천으로 기록하거나 부(父)와 조(祖)를 바꾸고 노(奴)와 상진을 구분할 수 없게 하는 등 호적작성을 부실하게 하므로 춘원면민이 민소(民所)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호적감색을 타살하고 호적자료를 불태워버린 사건이었다.²⁸⁾ 한편 이 사건에는 춘원면에 대한 고성현과 통제영 사이의 관할구역 갈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성현에서 내려온 군정 징수장부인 호적대장에 사실과 다른 오류가 많은 것을 발견하자 춘원면의 집강(執綱)과 약정(約正)이 이를 바로잡고자 하였다. 그러나 고성현에서는 군전 납부 독촉이 심하여 잘못된 호적대장을 근거로 징수를 강행하면서 사태가 확산되었다. 집강 김종률(金鍾律)은 고성현에서 내려온 유학전(幼學錢)을 추쇄하기 위해 돈을 낼 사람의 성명이 침부된 전령이 도착하자 약정으로 하여금 이를 베껴서 각 동에 돌려보도록 하였다. 이후 호적장부가 잘못된 것에 대한 항의가 있자 집강은 이를 시정하겠다고 하였지만 민인들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 집강과 약정은 관이 독촉이 심하여 징수를 강행하였다. 이에 농민들의 자치기구로 보이는 민소에 관행 홍섭(洪涉)과 공원 이상길(李祥吉)이 춘원면 69동에 통문을 돌려 모든 민인들이 참석하는 제1차 어변정(禦邊亭) 민회를 개최하였다. 모임에는 69동 동임을 포함하여 일반 민인들도 대다수 참여하였다. 8월 5일 어변정 민회에서 논의는 홍섭이 주도하였고, 통제영에 정소(呈訴)를 결정하였으며, 등장(等狀)은 홍섭이 직접

28) 이에 대해서는 고동환, 「대원군집권기 농민층 동향과 농민항쟁의 전개」, 『1894년 농민전쟁연구 2』, 역사비평사, 1992 참고.

작성하였다. 이상길이 등장을 가지고 통제사에게 올리자 통제사가 식년(式年)의 호적대장을 가지고 호적감색을 대령하라는 제사(題辭)를 내주었다. 이에 따라 8월 12일 호적감색이 통제영에 대령하고, 민소에서는 그 다음날 호적을 고치는 부관소(部官所)에 모두 집결하도록 하였다. 호구단자와 호적대장을 일일이 대조하여 수정작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추석명절이 되어 하루를 쉬고, 다음날인 8월 16일에 다시 어변정에 모이게 하였다.

제2차 민회 모임에는 각 동의 하예들로 하여금 각 가호마다 한 명의 장정을 출정하게 하고, 만약에 출정하지 않으면 집을 부수고 징벌하겠다고 하여 공동체적 강제력으로 농민들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수많은 민인이 모인 자리에서 동교동의 유학 이남준(李南俊)이 호적감색을 질책하자 이것을 계기로 수만 민인들이 폭력적 봉기로 항쟁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호적감색 이정관과 그 아들 이인규, 색리 김탁호가 사망하였다. 이 사건에는 하동의 동임 김봉석, 남초상(南草商) 윤복출(尹福出), 중영등패(中營等牌) 김명필(金命必)과 양당동 존위(尊位) 홍범구(洪凡九), 창동의 하예(下隸)인 김선산(金善山), 서구동의 사부(射夫) 천재철(千再哲), 신상동의 미상(米商) 김영국(金英國), 정동 유학 김장신(金章信)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인들은 사망자들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각 동리의 민호에 장작을 가져오도록 하여 시체를 불태웠다.²⁹⁾ 시체를 불태우는 데에는 결인이나 소상인들이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대부분 호적에 입적되지 않아 호적문란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자들이었지만 대개는 향촌사회에서 빈농민으로 유리하기 직전에 있어 불만이 적지 않았던 부류였고, 마을 공동체의 이해관계를 토대로 한 반봉건항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초기에 호적 이정(釐正)문제를 주도하였던 민소의 판행(判行)과 공원(公員)은 항쟁이 폭력화되는 과정에서는 전혀 가담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된다. 농민항쟁이 폭력적으로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동임인 김봉석, 홍범구 등의 주도하에 빈농층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변하였다.

고성농민항쟁의 보고를 받은 조정에서는 호적감색을 살해하는 데 앞장 선 자를 먼저 처형한 후 보고하도록 하고 현감 심의직(沈宜稷)을 파직시키고, 전 현감 윤석오(尹錫五)도 호적에 관한 일을 모두 감색에게 일임하여 난을 일으키게 한 죄로 의금부에 나문(拿問)되었다. 이어 통제영에서 창원부사 윤영하(尹永夏), 사천현감 오신묵을 조사관으로 임명하여 난의 전모를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 조사에선 수창자로 지목된 김봉구, 윤복출, 김명필 등 3명을 효수(梟首)하였으며, 결인 3명은 옥중에서 사망하였다. 이 외에 통문을 발급한 민소 판행이나 공원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가볍게 처벌하였다.

통영의 조사 보고를 접한 조정에서는 보고서가 매우 소홀함을 지적하고 죄인을 통영에서

29) 『慶尙監營啓錄』 3책(『각사등록』 11권, 경상도편, 국사편찬위원회), 226-279쪽 참조.

다시 순영으로 이송하여 재조사하도록 명령하였다. 순영의 조사관으로는 통영에서의 조사관을 포함하여 거창부사 조운경, 청도군수 김도균 등을 추가하여 엄밀하게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라 홍섭은 엄형 3차 후에 遠惡島 유배형을 李祥吉·홍범구·이남준·林子瑞·김종률 등 5인은 엄형 2차 후 遠地定配를 내리고, 그 외 徐石俊·金善山 등은 순영에서 참작하여 처벌하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정부에서는 고성현과 통제영의 관할 구역 간의 대립이 항쟁을 발생시킨 원인이었다고 판단하고 고종 7년에는 고성현을 고성부로 승격시킨 다음 통제영 안에 옮기고 고성부의 3정(三政)이나 부사의 전최(殿最)는 통제사가 담당하도록 정하였다.

2) 1894년 고성 농민 항쟁

1894년 7월 발생한 고성민요의 발단은 이향족(吏鄕族) 사이의 갈등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향인(鄕人) 허태숙(許太淑)과 최낙도(崔洛道) 두 사람이 대동색인 박필화(朴弼華)와 정병숙(丁炳淑), 사창색인 정민국(鄭民國)과 황종태(黃宗台)에게 돈을 꾸기로 요청했다가 거절당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이족(吏族)인 김상헌(金相憲)·박규신(朴奎信)·박남두(朴南斗), 향족(鄕族)인 허명한(許明漢)·최응칠(崔應七)·이응도(李應道)·정대권(鄭大權) 등과 함께 손을 잡고 남배를 교혁하겠다고 민회를 열었다. 그런데 현임의 이서들은 병방색과 대동색을 차지하려는 김상헌과 박규신이 허태숙과 최낙도에게 폐단을 바로 잡는다는 것을 빙자하여 감영에 의송장(議訟狀)을 보내고 읍사(邑査)를 벌이면 흉년에 주민들을 위하여 공을 세우게 되어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며 허태숙과 최낙도를 조종하였다. 허와 최는 배둔에 가서 이응도와 허명한 등을 만난 후 의견을 주고 받은 후 장두에 최응칠과 정대권, 그리고 좌수 직임을 얻지 못해 불만인 이응도를 추대하여 민회를 열어 남배(濫排)의 폐단을 교혁할 것을 모의하였다.

고성읍내 장날인 7월 21일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모이는 날이었다. 거사를 준비하는 주동자들은 5일마다 열리는 장시의 특징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지역 주민들에 의해 개최된 최초의 민회는 읍내에서 가까운 용두정(龍頭亭)에서 열렸다. 이들은 고성을 거쳐 간 전임 부사 10명의 비리를 철저하게 다시 조사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마침 고성부사로 재임 중인 오횡목이 대구 감영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이후 다시 모이기로 하고 해산하였다. 이를 후 감영에서 돌아 온 오횡목은 좌수와 공형을 통해 민회가 있었던 사실을 보고 받고, 주민들이 요구한 남배의 내용을 자세하게 조사할 것을 명령하였다. 다음 날 고성부사는 전령을 내려 비리 내용을 각 면의 해사자(解事者)들이 관청에 모여 조사하면 될 것이므로 다른 주민들은 모임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27일에 해사자들을 모이도록 하였으나 사정이 있거나

거리가 먼 곳에 있는 면의 대표들은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공형과 이서들은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 이전의 형태와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단순하게 효유하여 처리하고자 하였다.

28일 북삼면의 주민 5, 6천명이 해사자 소수만 관청에 모이라는 전령을 무시하고 교통의 요지이자 큰 장시가 열리는 배둔(背屯)에 모여 민회를 열었다. 이들은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죽장을 짊고 ‘교혁안민(矯革安民)’ 이라고 쓴 깃발을 높이 세워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또한 다음날에는 읍내로 들어갈 것이므로 북삼면 이외 지역 주민들도 용두정에 모이도록 연락을 취하였다. 이때 하동에서도 민요가 일어나 조사관으로 가던 오형묵은 곧바로 돌아와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번 민회가 단순한 요구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대규모로 모인 것이 아님을 파악한 오형묵은 공형을 꾸짖고 민회소에 가서 일을 해결하라고 하였다. 부사의 명령을 받은 공형과 좌수 등은 즉시 민회소로 가서 장두(狀頭)를 만나려고 하였지만 성사되지 못하고 오히려 민회소에 모인 자들에게 구타를 당하였다. 장두가 이를 말리고자 하였으나 그동안 공형이 보여 준 갖가지 행태들이 백성들의 분노를 사고 있었기 때문에 소용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성부사는 직접 배둔에 있는 민회소를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부사는 軍中처럼 모습을 갖춘 민회소에서 장두인 최응철·정대권·이응도·허태숙·최락도 등 10여 명을 만났다. 장두들은 고성 주민들이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편 당장 감당해야 할 응납(應納)을 어찌할 수 없어 민회를 갖게 되었다고 연유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를 부사가 원만하게 해결해 줄 것도 기대한다고 하였다. 부사는 그동안의 경과과정을 설명하고 회민들을 해산시킨 후 각 면에서 해사자를 1인씩 선출하여 폐막을 조사하자고 제안하며 장두를 회유하였다. 이때 무리 가운데 한 명이 뛰어나와 검독(檢督)을 민간에 파견하여 작폐(作弊)하도록 방지한 이유를 들어 강경하게 항의하였다. 이에 대해서도 부사는 전후 사정과 그동안 조치한 사항들을 설명하며 그를 비난하였다. 더욱이 전임 10명의 부사 재임시 문서를 조사하는 것은 문서도 남아있지 않아 불가능하다고 단호하게 대응하였다.

부사의 완강한 답변에 향민들은 1889년 민소(民訴)에 따라 감영에서 만들어 준 절목이 있으므로 그것에 근거하여 모두 조사할 것을 제안하였다. 부사는 몇 년간의 사안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부사가 회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서 분위기는 한결 누그러지면서 도리어 부사에게 향민들의 장두가 되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부사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자신을 믿고 해산할 것을 요구하였다. 장두는 각 면의 회민들에게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지만 용두정에 모이기로 한 사람들에게 함께 가서 해산하도

록 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에 부사와 장두, 그리고 회민들이 함께 용두정을 거쳐 읍내로 들어왔다. 부사와 장두는 객사의 동대청에 함께 앉았고, 다른 회민들도 조사가 끝난 다음 돌아가겠다며 대청의 좌우에 모여 앉았다.

조사는 민사이므로 도감과 색리를 향천(鄉薦)하였는데, 이동석(李彤碩)·최방언(崔邦彦)·정진권(鄭鎭權)을 도감으로, 퇴리(退吏) 김상헌(金相憲)·박규신(朴奎信)·송기욱(宋基旭)을 조사에 참여하도록 정하였다. 또한 부사는 공형(公兄)과 각 이서들에게 이번 조사는 민원에 의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민회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제반 일을 민원에 따라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신하였던 이서들은 장두가 신변을 보장한다는 말을 듣고 민회소로 나와 1889년 이후의 문서 등을 조사하게 되었다.

그런데 조사를 진행하는 중 밖에 있던 향민들이 향인 이동석, 이진묵(李鎭默)과 경주인(京主人) 최중삼(崔重三)의 집을 부순 후 서문으로 이동하여 읍리(邑吏) 박문기·김병용·박진국·정병을·정병호·정병숙·김지협의 집을 부수고 불을 지르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부사는 즉시 장두를 불러 사태가 확산되는 것을 막도록 하였고, 장두들은 민인들을 설득하여 진정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도리어 장두가 이서들에게 뇌물을 받았다고 먼저 장두를 죽여야 한다는 요구도 터져 나왔다. 이에 장두와 여러 사람들이 각 면의 면장과 집장을 불러 모아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도록 하여 겨우 수습되었다.

장두들은 회민의 식가(食價)로 1천여냥을 요민에게 빌렸고, 각 면의 집장을 통해 지급된 액수는 각호 1명당 5전씩 모두 1,800여냥에 달하였다. 그리고 부사도 300냥을 변통하여 사실소(查實所)에 지급하였다. 회민들은 추가로 경주인이 배에 실어 놓은 수천냥의 돈을 빼앗아 사실소의 경비로 사용하자고 하였으나 부사가 공전(公錢)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며 허락하지 않았다. 이서들도 사태가 조금 진정되는 분위기에서 나름대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고심하였다.

그런데 회민들은 평소 원망을 사거나 일을 일으키지 말 것을 제안한 서마암 송계동의 이진묵 본가, 포도면 매정포의 이맹규, 구만면 연동의 이현규와 이동석 본가, 최응삼과 읍리 천세만·김지순·정한우의 집을 습격하여 소각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수습되는 듯하던 민요는 다시 확산되는 상황에서 부사도 다만 장두와 각 면 집장을 말로 꾸짖을 뿐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였다.

8월 1일 부사는 민회소로 가서 사태가 악화되고 견잡을 수 없이 확대되면 장두와 주동자의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회민들의 해산을 요구하였다. 다음날은 석전(釋奠)이었으므로 유림들도 읍내에 많이 들어왔다. 이들은 장두와 함께 부사를 설득하려 조사를 조금 더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부사는 일의 성패는 오로지 난민이 해산하는 데 달려있으며, 향산이

있는 자가 난민의 무리에 섞여 있음은 장두들이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후 집강의 노력으로 대다수 회민들이 해산하고 읍내에 남아 있는 자들은 1백여명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회민들이 빼앗아 길가에 쌓아두었던 물건들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민사를 끝낸 장두들은 1889년 이후 남배된 액수와 새로 정한 원칙, 그리고 민장을 부사에게 제출하였다. 부사는 민장 내용을 감영에 보고하여 절목을 발급받도록 하고, 새로운 식례(式例)에 따라 각 면에 절목을 파급하겠다는 제사(題辭)를 써주었다. 부사가 민장에 따라 각 면에 전령한 절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남촌진과 구소비포진의 모호(募戶)는 민정(民呈)이 있는 다음에 시행한다.
2. 각 면의 모탈호(冒頂戶)는 1888년 호적에 의거하여 가총(家總)을 계산하여 시행한다.
3. 포도면 상서면 도선면은 반호반결(半戶半結)을 시행하지 않는다.
4. 경주인과 영주인의 역가(役價)는 절목에 따라 시행한다.
5. 도봉소(都奉所)는 영원히 혁파한다.
6. 염세와 선세를 3곳에 가세하는 것은 시행하지 않는다.
7. 균역색은 영원히 공형이 맡으며 읍징(邑徵)은 시행하지 않는다.
8. 전세 대동세 포랑미는 절목에 따라 시행한다.
9. 목직(木直) 첨보(添補) 잡가(雜費)는 매필 16냥씩 시행한다.
10. 별락색(別落色) 5백냥은 영구히 혁파한다.
11. 반호반결을 시행한다.
12. 향회(鄉會)는 영구히 혁파한다.
13. 공생호(貢生戶)는 시행하지 않는다.
14. 민고도감(民庫都監)과 색장(色掌)은 혁파하고 소관 사항은 각 담당 색리가 담당한다.
15. 이역청(吏役廳)은 없애고 무역은 관청색이 담당한다.
16. 이향(吏鄉)은 향천(鄉薦)하고 예채(例債)는 영구히 거론하지 않는다.
17. 사창색, 병방색, 대동색, 관청색은 향천하여 1명의 이를 차출하되, 만약 암채(暗債)의 혐의가 있으면 영에 보고하여 형배토록 한다.
18. 이향의 임기는 24개월로 하나, 만약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다스리나 내쫓지는 않는다.
19. 이액(吏額)은 『대전회통』에 따른다.
20. 서가(書價)는 면두(面斗)에 따라 시행하고 매두(每斗)의 대전(代錢)은 4전씩 풍흉을 막론하고 시행한다.

21. 노세(路費)는 해당 동회가 면두승(面斗升)을 지급하여 예에 따라 시행한다.
22. 시승(市升)은 8결도(結刀)로 3승짜리로 새로 정하고 여왜(女僮)는 시행하지 않는다.
23. 각 공전(公錢)의 분정(分定)과 체납(替納)은 영구히 거론하지 않는다.
24. 성내 3동의 호역(戶役)은 1/3로 시행하나 결(結)에 따른 것은 시행하지 않는다.
25. 사마와 정려호 외 감역, 감찰, 도사, 군사마, 도정, 가자호의 제역(除役)은 일체 거론하지 않는다.
26. 예목전(禮木錢)을 민간에 배렴하는 것은 거론하지 않는다.
27. 인리(人吏)의 복호전 100결은 영구히 혁파한다.
28. 각 공전의 수납은 오로지 집강이 담당하고, 도감은 면수(面首)가 담당하여 영구히 시행하지 않는다.
29. 관예(官隸)와 유수배(遊手輩)의 족채(足債)는 영구히 시행하지 않는다.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삼반관속(三班官屬)들은 억울하다고 호소하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하고, 장두들을 위협하였다. 부사는 공형 등을 꾸짖고 하옥시키는 한편 장두들에게 안심하라고 하였다. 6일에는 민요가 일어나자 대구감영으로 의송을 가지고 갔던 장두 최응철의 아들과 허태숙의 아들, 그리고 허명한 등이 돌아왔다. 이들이 가지고 온 문서에는 민회를 즉시 해산하고 향중의 해사인과 담당 이서가 문서를 가지고 오라는 지시가 있었다. 통영에 들어갔던 부사는 자신이 이미 해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고성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며칠 후 이방과 고성주민이 번갈아 찾아와 사태를 수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수천명의 고성주민들은 다시 용두정에 모여들었다. 통영에서는 부사를 돌아가게 할 것과 공형과 아전들을 잡아들인다는 약속을 하여 회민들을 해산시킬 수 있었다.

8월 18일 이후에는 감영으로부터 명령이 내려와 부사가 사관이 되고, 민원(民願)에 따라 선출된 정진교와 최방언이 사감이 되고, 박남두와 황정일이 사색(査色)이 되어 재조사를 실시케 되었다. 재조사가 열리는 19일 사실소 주변에는 인근 주민 백여명이 모여들었다. 부사는 조사하는데 방해된다고 회민들을 해산시켰다. 조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자 감영에서도 잡아 가두었던 세 명의 이서를 석방시켜 조사에 임하도록 하였다. 부사 오횡목에 의해 사태가 수습되어 가자 되리 두 사람은 각기 대동색과 병방색의 직임을 희망하였다. 민회소에서는 부사에게 이듬해의 대동색·병방색·사창색을 자신들의 사람으로 차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과정에서 오횡목은 좌수에 허명한, 이방에 박남두, 호장에 김주섭(金柱攝)을 임명하고, 그 외 일부 직임을 자신의 뜻대로 교체하였다. 재조사는 시작한 지 일주일만인 8월 25일 마무리되었다. 1889년 이후 납배한 액수는 모두 41,334냥 6전 2푼이었다. 이

가운데 모록(冒錄) 납배된 것이지만, 이미 식례가 된 5천여냥과 관청 구폐전 5천여냥은 향 중에서 제공한 것이고, 영주인전은 별복정 대전 가운데 남징된 것이나 모두 감영의 감결(甘結)에 따른 것이고, 경주인전은 모두 서울 각 기관의 예목전과 여러 가지 항목의 상납을 제때 하지 못한 데 따른 비용이었다.

한 달이 넘게 지속되었던 고성민요는 일단락되었지만 이후에도 고성민들은 자신의 권익을 위한 저항을 그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9월 12일과 16일 동학도 수천명이 고성으로 들어왔다. 그 중 일부는 상리면 신리에 주둔하였는데, 대구 삭토사가 감영의 군대와 일본병을 이끌고 와 이들을 격퇴하였다. 진주의 경상우병영에서는 장두였던 정대권과 이응도를 동학도로서 농민군을 끌어들이었다는 명목으로 총살하였고, 또 다른 장두였던 최응칠은 통영의 관수미를 견제하였다하여 통영에 투옥하였다. 그리고 부정이 심했던 하리 정병호·정병숙·박문기와 그 외 민요를 일으켰던 장두 김상헌·박규신을 체포하라고 감영의 지시가 내렸다.

고성민요는 주동자들이 거주하던 마암면 구만면회현면의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참가하였다. 북삼면 지역이 민회를 주도한 이유는 주동자들의 거주 지역이므로 쉽게 조직되어 동원될 수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고, 통영의 둔답이 회현면과 구만면에 있었고, 앞서 두 면의 주민들은 진폐된 둔답의 세금을 감면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등 평소에 폐단이 대한 불만이 심하였다는 내용도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

이와 같은 고성민요는 자연재해에 따른 흉년, 가중되는 조세 부담, 농민경영의 상품화폐 경제로의 편입, 농촌의 신분계급 양극적 분화, 향촌사회세력간의 갈등, 전국적인 농민항쟁의 발발과 국가통제력의 약화 등의 요인이 상호 작용하면서 발생하였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1870년대 중엽부터 1894년에 이르기까지 빈번하게 발생한 자연재해에 따른 혹심한 흉년이였다. 특히 1891년부터 심각해진 흉년의 피해는 1894년에 이르러 극도에 다달았다. 1894년 보리수확이 많은 비로 인하여 1/3이나 감소한데다 다시 가뭄이 이어져 흉년이 들 것이 예상되자 농민들은 조세납부 독촉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민요를 일으켰다.

3) 경남지역의 동학농민운동 전개와 고성

1876년 개항을 계기로 조선은 세계자본주의 체제로 편입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변동을 겪게 되었다. 18세기 말 이래 제기된 반봉건(反封建) 문제를 비롯하여 반침략(反侵略), 반외세(反外勢)라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19세기 이후는 중세사회가 해체되고 근대사회가 태동되는 시기로 사회 내부의 모순을 둘러싼 각종 갈등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부세운영은 상품경제의 발달과 신분제의 붕괴로 인하여 크게 변화하였다. 특히 개항

이래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던 재정은 그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민인에 대한 수탈이 가중되었다. 이 과정에서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지방관을 비롯한 중간 수탈자층이 증가하면서 농민들을 비롯한 조세 부담자들의 생활을 더욱 악화되는 추세에 있었다. 여기에 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가뭄의 피해는 일반 민인의 생활을 더욱 곤궁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지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민요와 봉기가 발생하였다. 경남지역에서는 동학농민운동의 발단이 되었던 고부봉기가 일어났던 1월 중순에 이미 곳곳에서 민요가 발생하고 있었다. 1894년 1월 12부터 수일간 함안의 민인들이 동문 밖 사정(射亭)에 모여 향리 한영두 등의 집을 방화하는가 하면 500~600명이 ‘창의교혁기(倡義矯革旗)’를 내세우고 수령과 이서들의 수탈에 저항하는 봉기가 있었다. 사천에서 1월 16~17일 민인 수백명이 ‘읍폐교정(邑弊矯正)’을 요구하면서 봉기하여 읍촌내 서리(胥吏)들의 집 십여호를 불태우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감영에서는 영교(營校)를 파견하여 일을 수습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2월 3일 또다시 민인들이 봉기하여 관아의 뜰에 돌입하자 고성부사로 있던 오형목을 파견하여 난을 수습하였다. 3월 중에는 김해에서도 민란이 발생하여 수령이 민민들에게 인부(印符)를 빼앗기고 쫓겨나기도 하였다.

이후 경남지역에서는 농민의 봉기가 한동안 발생하지 않았는데, 7월에 들어서면서 다시 민란이 격화되었다. 7월 중순경에 영천과 영덕 등 영남 북부지역에서 민요가 발생하였고, 7월 21일에는 고성, 7월 28일경에는 하동, 8월 2일에는 산청 등에서도 농민봉기가 있었다. 경상도 대부분의 고을에서 민란이 속출하였지만 감영으로서는 민란의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구조적 모순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인근 고을 수령을 사관(査官)으로 파견하여 임시적으로 수습하는데 그치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중앙조정에서도 안핵사(按覈使)를 파견하여 수령이나 이서(吏胥)를 처벌한다든지 윤음(綸音)을 내리고, 일부 부세를 탕감하는 등 임시적인 미봉책을 사용하는 정도였다. 민란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호남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동학군은 영남지역에 영향을 주었다. 7월 하순에 고성지역에서 민요를 주도하였던 정대권(鄭大權)과 이용도(李應道) 등이 동학과 연결하여 그들을 끌어들이었다고 하여 포살당하고 있는 사실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경남 서부 지역에 동학도들의 활동이 조직적으로 시작된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것이 없다. 다만 1893년 열린 보은집회에서 하동과 진주접(晉州接)의 소속의 동학도 수십명이 참여했다는 것으로 보아 이즈음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경남의 경우 진주의 덕산(德山) 등 지역이 동학도의 중요한 거점지역이 되었다. 덕산은 1862년 진주농민항쟁 때 첫 봉기지의 역할을 하였고, 1870년 이필제(李弼濟)가 진주작변을 계획할 때도 중요한 거점으

로 주목된 곳이었다. 그러나 덕산 지역의 동학도에 대한 추포(追捕) 활동으로 1894년 4월 중순 이후 이 지역의 동학세력은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나 6월 말 이후 호남 동학군이 소백산맥을 넘어 경남 서북부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경남 서부지역 동학도들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6월 하순 남원의 동학군이 운봉을 거쳐 함양을 공격하고 이어 안의(安義), 단성 등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관군의 기습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산곡간으로 흩어졌다.

호남 동학의 활동이 확대되는 가운데 7월 이후에는 영남지역에서 민란이 연이어지면서 농민들의 고조된 분위기에 편승하여 동학조직의 영향력이 더욱 거세졌다.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7월 말에서 9월 초에 두 명의 동학도가 경남지역 각 읍을 순행하다가 체포된 사건이다. 하동에 거주하는 최학봉(崔鶴鳳)과 김병두(金炳斗)는 동학도로서 호남 동학군의 두령 전봉준의 지시에 따라 창원, 마산, 고성, 통영, 김해, 동래 등 각 고을을 돌아다니며 행정 상황 등을 탐문하고 다니다가 붙잡힌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경남지역에서도 동학의 영향력이 깊숙이 침투하여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무렵 고성부사로 있다가 민요 발생으로 인해 체임되어 서울로 올라갈 예정에 있던 오형묵은 8월 16일 동학도 2명을 만났는데, 그들도 각 고을의 상황을 탐문하러 왔다고 하였다. 그 중에 금구에 사는 동학도라고 하는 한헌교(韓憲敎)가 경상우도의 상주, 선산, 성주, 고령, 의령, 함안, 사천, 단성, 진주 등지에 동학도들이 곳곳에 가득차 있기 때문에 이곳을 피해 연해읍을 따라 대구로 올라가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³⁰⁾ 오형묵은 당시 인근 지역에 동학도의 세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은 시로 읊기도 하였다.

동학의 형세가 갈수록 더하니 / 지나는 고을마다 난마(亂麻)와 같구나 / 한 바탕 말싸움이 무력보다 강하니 / 우리 고을 향하여 날카로움 세웠도다.³¹⁾

이러한 내용은 동학도들이 경남 서부지역 곳곳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상도 지역에서는 8월 말부터 동학농민군의 읍내 점거와 무기탈취 등의 본격적인 활동이 전개되었다. 경남 지역에서도 9월 1일부터 호남 동학군과 연대하여 본격적인 봉기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하동, 통영, 진주, 남해, 사천 등지에서 동학도와 관군과의 공방이 전개되는 가운데 고성지역에도 수많은 동학도가 읍내에 들어왔다. 사천지역에서 800여 명의 동

30) 『경상도고성부총쇄록』 갑오년 8월 16일.

31) 『경상도고성부총쇄록』 갑오년 8월 16일.

학도가 총검을 들고 읍내에 들어가 관속들을 위협하고 하리의 집을 방화하였고, 우마와 의복 등을 약탈한 후 고성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오횡묵의 『경상도고성부총쇄록』에 의하면 9월 13일에 동학도 수천 명이 고성에 들어왔는데 식량을 공급할 수 없어서 포랑미로 아침과 저녁을 접대해서 보냈으며, 9월 16일에 또다시 1천여 명의 동학군이 읍내로 들어와 포랑미로 먹여 보냈다. 이에 대구초토사가 본영의 병정과 일본 병력을 거느리고 와서 동학무리를 수색하여 포획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오횡묵의 후임으로 부임한 신경균(申慶均)의 보고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즉 고성에서는 마침 수령이 비어있던 때였는데 동학도 6백여 명이 읍내로 들어와 포랑미를 빼내 인근 마을에 나누어 주고 밥을 짓게 하였고, 부랑난류(浮浪亂類)들을 동학도로 끌어들이고 민인들을 위협하여 재물을 탈취하였다고 보고하였다.³²⁾

9월과 10월 관군 및 일본군과의 본격적인 전투가 전개되는 시기를 전후해서 동학군은 각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활동하고 있었다. 특히 진주를 중심으로 한 동학군이 고성을 비롯하여 사천, 곤양, 단성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관군과 일본군의 계속되는 토벌이 이어지면서 동학군의 세력은 크게 위축되었다. 고성에서도 관군과 일본군이 들어와 동학과 관련된 정대권과 이응도를 체포해가고 있다. 동학도의 활동과 세력이 약화되면서 일부 고을에서는 관에서나 민포조직에 의해 방위조직을 갖추고 동학군 진압에 나서기도 하였다. 고성에서도 관속과 일반 백성들을 동원하여 이들에게 무기를 주고 지역을 나누어 지키는 방어체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었다. 『경상도고성부총쇄록』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동학당은 모두 토평(討平)되었는데 본관은 부임한 지 3일만에 이중현(李仲賢)을 千摠으로 특별 채용하여 옆 방에 두고 아침저녁으로 특별 공급하게 하였는데 대저 용력이 있기 때문이고, 또한 관군 20명을 파견해서 총과 칼을 주어 4門(四門)을 파수(把守)하게 하고 백성 수십 명씩 고을 사방에 나누어 지키게 하되 5리 거리로 파수하게 하니 포를 쏘는 소리가 밤낮으로 끊어지지 않아 안팎으로 서로 호응해서 끝날 날이 없다고 한다.³³⁾

대구에서 파견되었던 일본군과 관군은 각 고을에서 동학도의 활동이 위축되고 치춤 안정을 되찾아가는 형세를 보이자 호남과 충청 지역의 동학군을 토벌하기 위해 철수하였다. 10월 24일 하동을 떠난 일본군과 관군이 11월 1일 부산에 도착하면서 경남 서부지역 동학군에 대한 연합토벌 작전은 일단 마무리 되는 형국이 되었다. 이후 동학군의 활동에 대한 내

32) 『狀啓』 규장각한국학연구소장, No.80932.

33) 『고성부총쇄록』 갑오년 11월 26일.

용이 단편적으로 나타나지만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인 것은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경남 지역에서 동학군의 활동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서서히 소멸된 것으로 파악된다.